

집담회 자료집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피해사례와 사각지대 제로-ZERO운동의 방향

- 주 최 : 코로나19-사회경제 위기대응 시민사회대책위원회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
- 일 시 : 2020년 6월 3일(수) 오후 2시
- 장 소 :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 자료집 순서

▶ 집담회 안내	2
▶ 도심제조노동조합 연석회의 자료	5
▶ 봉제-줄어든 일감	22
▶ 사회적협동조합 행복한 돌봄(가사관리사, 베이비시터)	23
▶ 코로나19관련 요양보호사실태 및 지원정책 제안	28
▶ 코로나19 특수고용노동자에 미친 영향과 과제	34
▶ 고졸청년들의 동아리 '처음처럼' - 코로나19로 인한 해고 사례	45
▶ 포스트 코로나 시대, 문화예술에 대한 새로운 대안과 상상력의 필요성	48
▶ 코로나19 정부정책 주요 내용과 평가: 사각지대 해소가 필요하다	55
▶ 재난시기에 필요한 민관협력과 지방정부 정책	79
▶ 사각지대 노동자 고용생계소득 위기 극복을 위한 민주노총의 대응 현황 및 계획	82
▶ 코로나19 사각지대 실태와 대안	95

□ 발표 순서 및 발표자

- 1부 사회 : 이남신 소장(서울노동권익센터)
- 2부 사회 : 송경용 이사장(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구분	주제	발표자	소속과 직책
일자리 피해사례 종합발표	도시제조업(제 화)	박완규	서울일반노조 제화지부 부지부장
	도시제조업(봉 제)	이정기	화섬노조 봉제인지회 지회장
	가사관리사 베이비시터	배영미	사회적협동조합 행복한돌봄 사업팀장
	요양보호사	임지민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기획 운영국장

	대리운전 및 특수고용노동 자	김주환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위원장
	매장판매직	김창수	우리동네노동권찾기 대표
	문화예술인	박선영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팀장
정책제언 집담회	정부지원정책 모니터링	이철	서울노동권익센터 정책기획국장
	민관협력 제언	문종찬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긴급지원과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 당사자주체강 화와 운동방향	이광규	민주노총 정책국장
	사각지대 현황과 대책, 사각지대 제로운동의 방향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연구위원
※ 집담회 참가자 전체토론			

□ 집담회를 여는 취지

-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일감이 감소한 상황에서 고용유지의 여력이 없는 작은 사업장 혹은 일자리 충격이 고스란히 전가되는 특고, 프리랜서를 비롯한 비정규 노동자와 영세사업장 노동자는 생계위협에 직면하고 있음.
- 특히 고용보험 미가입 노동자는 ‘내팽개쳐진 노동’으로 우리사회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음.
- 이에 정부는 ‘코로나19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재난극복을 위한 재정투입을 하고 있으나 지급기준, 지급대상, 지급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무대책에서 대책을 세워야하는 혼란스런 상황임.
- 더구나 ‘내팽개쳐진 노동’은 조직화되어 있지 않아 집합적 목소리조차 형성되고 있지 못해 정책생산 참여의 통로도 없음.
- 따라서 현장노동자의 목소리를 사회화하고 ‘사각지대 제로(0)운동’의 방향을 모

색하고 포스트코로나시대의 노동권이 보편적으로 보장되는 새로운 노동체제 확립을 위한 노동시민운동의 출발점으로 삼고자 함.

□ 집담회의 목표

- 고용안정, 사회안정망의 사각지대 노동자와 일자리피해사례를 드러냄.
-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고용현황 모니터링 필요성을 부각함.
- 코로나시민대책위의 ‘사각지대 제로운동’의 방향을 제시함.
- 코로나19시기 사각지대 노동자들의 긴급 고용생계소득보장 요구방향과 코로나19 이후까지 내다보는 노동권사회안전망 사각시대의 근본적 해소방안에 대하여 논의함
- 정부주도를 넘어 당사자 주체성 강화와 노동자시민참여 정책생산강화를 중심에 놓는 코로나시민대책위 사각지대해소운동 방향을 모색함
- 코로나재난시기에 지방정부 설립 노동자지원센터의 역할을 찾고 전국적 공동사업을 모색함.

□ 집담회 순서

구분	내용	발표자	비고
개회	주최단위 인사말	코로나시민대책위, 한비네	5분
사례종합	일자리피해사례 종합 발표	도시제조업(제화, 봉제), 가사관리사, 요양보호사, 대리운전, 매장판매직, 예술인	사회: 이남신 소장(1시간)
정책제언집담회	사각지대 제로 정책제언	- 정부지원정책 모니터링 결과(이철, 7분) - 지방정부 차원의 정책제언(문종찬, 7분) - 사각지대 실태와 대안(15분) - 노동권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방안(이광규, 15분)	사회: 송경용 이사장 (45분)
종합토론	사각지대 제로운동의 방향	전체 토론	사회: 송경용 이사장 (45분)
폐회	공지사항 등	코로나시민대책위	10분 이내

[도심제조노동조합 연석회의 경과보고]

- 구성 : 봉제 - 화섬노조 서울봉제인지회(노조,지회에서 참석)
주얼리 - 금속노조 서울지부 동부지역지회 종로주얼리분회(지회,분회에서 참석)
제화 - 서울일반노조제화지부(지부에서 참석)
인쇄 - 언론노조 서울경인인쇄지부 있으나 상근인력 없고 활동이 어려움
(현재 서울동부비정규노동센터와 금속노조 서울지부 동부지역지회에서
을지로,성수동 집적지 중심으로 조직화 사업 준비 중)
- 간사 - 서울동부비정규노동센터 / 민주노총서울본부 참관

- 간담회(2019.9.3 / 9.19) : '서울 도심제조 노동조합 연석회의' 건설 논의
- 1차회의(2019.10.10) : 공통의제 또는 요구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검토
- 2차회의(2019.10.24) : 공동요구안 마련 방안(경로) 논의
- 3차회의(2019.11.26) : 업종별 현장요구안 공유, 2020년도 공동사업 논의
- 4차회의(2019.12.23) : 서울시 도심제조 정책 발제, 2020년도 공동사업 논의
- 합동 수련회(2020.2.7~2.8) 경기도 양평 기러기펜션 / 총 14명 참석
 - 2020년 공동사업(노동절맞이 도심제조노동자 가족 운동회, 도심제조노동자 문화제) 및 공동요구안에 대한 서울시 노정교섭 추진 등 논의
- '전태일 50주기 기념, 도심제조 노동자와 함께하는 어울림 한마당' 공동추진
 - 노동절맞이 도심제조노동자 가족 운동회와 이소선어머니 어울림한마당 시기가 비슷하여 전태일재단과 공동추진 ☞ 코로나19 관계로 연기됨
- 5차회의(2020.3.10.) : 봉제(노동)공제회 관련 공유, 코로나19 관련 상황 공유
- 6차회의(2020.4.7) : 코로나19 관련 대책 및 서울시 노정교섭 추진안 논의

- 민주노총 서울본부 코로나19 긴급대책 토론회(4.24) 및 대책회의(5.7) 참석
- 노동조합별 기자회견, 증언대회 등 코로나19 피해 대응
-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서울시 국장 간담회 진행(5.22) : 봉제,제화 참석

[각 단위 별 현황 및 요구안]

1 제화노동자

1. 현황

- 사업체 수 300~400여개, 종사자 2,500여명 (서울 성수동, 봉천동 수도권중심 분포)
- 평균연령 62세로 고령의 제화기술 숙련노동자, 소사장제로 특수고용노동 형태 근무
- 2020년 2월 기준에 비해 근로시간과 작업 수량이 30~70%이하로 급감
- 월 급여(하루 8시간 근무 기준) 170~200만원에서 30만원~120만원으로 감소
- 일방적으로 근무형태 변경, 격일제(주2~3일)나 순환제 근무 방식으로 조정 강요
- 일자리안정자금과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사업장 1곳 뿐임 (대부분 고용보험 미가입)
- 3~4월 기간 일방폐업과 무단 공장폐쇄 등이 많은 것으로 추산하고 전수 조사 필요

2. 요구안

- 4대(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이 절대다수인 제화 노동자에 대한 긴급지원대책 필요
- 서울시와 고용노동부 긴급지원 관련 제도에 대한 신청 방법 간소화와 홍보활동 필요
- (중장기) 코로나 이후 재화산업 유지발전 전망에 대한 모색 필요, 사회적 협약체결 요구

2 주얼리노동자

1. 현황

- 종로·중구 귀금속 사업장 3,271개, 종사자 7,635명 (2018년 노동부)
- 사업장의 84%, 종사자의 76% 고용보험 미가입
- 평균 25%~30% 정도 물량 감소. 대다수 사업장에서 일방적 임금삭감, 폐업, 무급 휴가(휴직) 강요, 해고 건이 급증하고 있음. 사업주 협회 쪽에서는 물량 감소 이유로 4일제 근무 종용
- 평상시에도 물량감소와 적자를 이유로 몇 달 폐업 후 영업 재개 빈번함 (위장폐업)
- 임금 현금수령 및 4대보험 미가입 (76%) 으로 인해 노동이력 증명 어려움. 사업주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기피

2. 코로나19 피해 사례

- 정부가 코로나19 대책으로 중소기업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최대 90%까지 지원하고 있으나 주얼리 업계 회사들은 대부분 이를 신청하지 않고 있음.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소속 노동자들의 4대보험 가입이 필수이기 때문.
- 최근 코로나19사태에서 사업주들은 한발 더 나아간 악마의 계산을 시작했음. 처음엔 코로나19로 주문량이 감소했다며 주 5일 근무를 주 3~4일로 축소함. 일을 하지 않는 날에 대해서는 임금을 3~50만원씩 삭감함. 최근 들어 주문량이 평소 수준으로 회복되었으나 사업주들은 주 3~4일 근무를 지속함. 그리고 노동자들이 출근한 날에는 밤 10시, 11시까지 잔업을 강요. 사업주들은 평일의 연장근무수당은 포괄임금제로 이미 임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줄 것이 없다고 주장함. 결국 노동자들은 평소 월 300만원을 받았으나 주 3~4일 근무를 하며 월 250만원을 받으면서 근무일에는 밤 10시, 11시까지 잔업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몰려있음. 노동자들은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하며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대부분 그렇듯 사장과의 의리로 주 3~4일 근무와 임금삭감을 고통분담 차원에서 받아들였으나, 사장들은 노동자의 '선의'를 악용하여 악마의 포괄임금제를 강요하고 있음

3. 요구안

-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확대의 첫걸음 - 의무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
 - 주얼리 업계의 만연한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한 대책 마련
- 위기에 처한 주얼리 노동자들의 생존권 보장, 고용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
 - 주얼리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삭감과 변칙적 포괄임금제 적용 중단, 사업주 처벌
 -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 행정지도
 - 임금삭감등 불법행위 중단, 고용유지지원금등 정부지원을 통한 노동자 피해 방지방안에 대한 제도 공문 발송
 - 주얼리 업종별 전담반을 통한 수시근로감독 체계와 노동자 피해구제 방안을 강구하여 코로나19이후 일상적으로 진행되는 불법행위 근절 대책도 마련
- 안정적이고 정례적인 주얼리 업종 노정 대화 테이블 구성

3 봉제노동자

1. 현황

- 특고, 프리랜서 특별지원금(서울시) 및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노동부) 한계 (약 9만명)
- 서울지역 사업체수 15,400개, 종사자 89,666명 (2017년 통계청)

인원	사업체수		종사자수	
	전국	서울	전국	서울
계	25,118	15,400	140,164	89,666
1~4명	16,577	9,647	36,918	24,012
5~49명	8,338	5,649	77,924	49,683
50명 이상	203	104	22,215	12,864

- 10인미만 사업장 종사자 비율 : 90% 이상
- 고용보험 미가입율 72.1%
- 최대 성수기 2월~5월, 8월말~12월초. 최근 50% 정도 물량 감소. 원단 수급 어려움 및 판로가 막혀 있는 상황
- 대부분 4대보험 미가입, 노동이력 및 소득증빙 증명 어려움, 단가공임제, 객공(숙련공)

2. 요구안

- 피해 대상자 전원에게 지원금 지급 (예산 및 지원대상 확대, 지원요건에서 소득기준 및 실질소득 감소기준 완화)
- 소득(감소)증빙서류 작성시 사업자번호, 사업장명 및 전화번호, 사업주 서명(사인) 관련 사업주들의 심리적 부담감 (세무조사 혹은 사후 세금 추징 증거로 사용될 우려 혹은 불신감) 해결 필요. 사업주에게 적극 홍보 및 공문시행 필요
- (중장기과제) 노동이력증빙 ID카드 발급제도 도입 : 지원금 신청 필수서류중 자격확인서, 서울봉제인노동조합 명의의 확인서 발급으로 대체 가능함 확인.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노동이력증빙 ID카드 발급제도 도입 제안
- (중장기과제) 4대보험 일부 지원제도 도입 제안 : 코로나19 극복 및 봉제업종 고용보험 미가입율 72.1%를 해결하기 위한 4대보험 일부 지원제도 도입 및 실시. 향후 5년 간 사업주(30%)/ 노동자(30%) /서울시(40%) 각각 분담을 위한 재정 및 관련 제도 마련
- 올해 5월1일 개최를 합의했으나, 코로나 19사태로 인해 지연된 전태일50주기 기념 <서울시·봉제인 정책토론회> 개최 일정 일정 및 준비기획 TF 구성 요청

4 인생노동자

1. 현황

- 2018년 기준 사업체수 18,101개, 종사자 수 75,222명 (*통계청자료 참조)
 - 종사자 규모로는 서울에 37.9%, 경기도에 34.9%가 취업하고 있음
- 10인 미만 사업체수 94%, 종사자 수 63%
- 5인 미만 사업체수 79%, 종사자 수 40%
- 1개 사업체 당 평균 종사자 수는 5.8명
- 노동조건 및 특성
 - 임금은 약 82%가 포괄임금제, 노동자에게 불리한 임금 지급 방식
 - 1주일 평균 노동시간 47.0시간 : 평균적으로 길지 않으나 일부 집단은 고위험군
 - 종사자 대부분이 장년층의 이직이 적은 저임금 노동자 계층
 - 가을부터 겨울까지 일이 많이 물리는 계절적 요인으로 과로노동 발생
 - 우리나라 노동자 평균보다 물리·화학적 유해요인, 근골격계부담 노출 수준 높음

2. 코로나19 관련 피해 사례

- 영세업체들의 경우 다수가 3~4월은 거의 주문이 없었으며, 편집디자이너들의 경우 재택근무 늘고 임금의 50% 또는 70% 를 받음
- 5월 들어 주문량이 늘고 다소 회복세가 보이나 일부에선 근무시간 단축, 편집디자이너의 경우 재택근무 등을 고착화하려는 사업주들의 시도가 보임
- 코로나-19 이전에도 영세업체들은 물량 감소로 인한 적자가 심각했음. 코로나로 인해 이러한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임.

◆ 정부, 지자체의 지원제도 및 방안의 현실과 비판

1. 두루누리, 노란우산공제, 1인사업자 4대보험 지원제도

- 사업자 중심의 지원 방안이다.
- 노동자에 대한 직접 지원이 없다.
- 소득의 기준 수준이 낮게 설정되어 있고, 한시적이다.
- 지원 재원도 한정되어 있다.

2. 정부 및 지자체 코로나19에 대한 지원 방안의 한계. 비판

- 핵심은 노동이력증빙 혹은 소득증빙이 전제되어 있다.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고용계약서)
- 확고히 종속된 노동자 중심으로만 지원하겠다?!
- 위장된 (?) 자영업자는 노동이력증빙, 소득증빙이 불투명해서 지원이 어렵다?

=> 각 지자체마다 지원 내용과 원칙이 형평성이 없고, 일관성, 통일성도 없다. 특히 일부 지자체 가구 소득기준 설정으로 적용안되는 대상문제가 발생 => 소득증빙, 근무이력 등 현실적이고 유연한 요건이 필요함.

=> 코로나19라는 재난시기가 아니라면, 기존 규모적 측면에서 사업주 지원 방식중심의 설계. (성과지표 중심, 지원구조나 채널이 쉽다는 이유로, 자신들의 업무편의적 사고)

코로나19라는 재난적 시기에 불가능하다고 우겨온 행정, 정치계가 노동자 당사자 지원구조 실시했다는 것은 그만큼 위기적 성격을 드러냄.

=> 서울시 재난지원금 지원정책의 문제점

- 최근 서울시 코로나19 재난피해 특수고용 프리랜서 노동자 특별지원금 50만원 지급
- 5월6일(이메일)/ 5월11일(방문)~5월22일, 신청서류 14종
- 총 사업비 : 90억(노동부30억, 서울시 60억), 수혜대상예상: 1,780명
- 최종 신청 접수건수 : 3만 여건

‘서울 4대 제조업(의류봉제·수제화·인쇄·기계금속)’ 긴급 자금 수혈로 일자리 지키기에 나선다. 지역의 기반 산업과 고용 위기 노동자를 동시에 지원하는 전국 최초 시도다. 추경을 통해 확보한 총 200억 원 투입.

※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140만원)과 중복 수혜는 불가

의류·수제화 등 4대 제조업 최대 3천만 원 지원...종사자 고용 유지 조건
5.20(수)사업비 지원 세부내용 공고→ 6.5(금)부터 의류봉제·수제화 사업
체부 터 접수

19년 매출이 없거나 사업비 지원 접수일 기준 국세·지방세 체납 업체 제외
50인 미만의 4대 도시제조업(의류봉제·수제화·인쇄·기계금속) 사업체당 최
대 3,000만 원 지원, 지원 받은 사업체는 최소 3개월 간 종사자 고용
유지.

약 1,500여개의 사업체가 지원 받을 것으로 전망.

‘도시제조업 긴급 수혈자금’은 신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산업을
활성 화하기 위해 시제품 기획·제작, 마케팅 등의 사업비 목적으로만 사
용.

인건비·임대료·운영비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음,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과 중복 수혜는 불가하다.

의류봉제, 수제화, 기계금속 등 4대 제조업 중 업종별 차지하는 비율에 따
라 지원규모 결정.

긴급사업비 지원신청과 지급은 ①의류·봉제, 수제화 ②인쇄 ③기계·금속 분
야 별로 순차적 진행.

=> 정부코로나19 지원방안 발표내용 에 대한 문제점

2

지원 대상 및 요건

I 지원 대상

❶ **특고·프리랜서:** '19.12~'2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 다만, 월 5일 이상의 노무 제공('19.12~'20.1월 중 10일) 또는 월 25만원 ('19.12~'20.1월 중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를 의미

▶ 특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

▶ 프리랜서: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일을 하는 자

- 직종 특성상 '19.12~'20.1월에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 감소 기간의 전년 동월('19.3~4월) 또는 직전 기간('19.10~11월)에 노무제공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

< 참고: 특고·프리랜서 예시 >

- 교육: 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후 교사 등
- 운송: 지입기사(레미콘트럭 등),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등
- 여가: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 판매: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 서비스: 골프장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 점검원, 간병인, 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 가사·육아도우미 등
- 기타: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 증빙서류: ①사업주가 발급한 노무 제공 사실 확인서 또는 ②기타 노무 제공 확인 가능 서류 (용역계약서, 위(촉)탁 서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등 택1)

② 영세 자영업자: '19.12~'20.1월에 자영업을 영위한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 참고)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을 운영하는 자,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의 사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 시 대표 사업장 1개만 신청 가능

- 다만, 해당 기간 매출이 있는 자를 의미하고,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무급휴직자에 준해서 지원

↳ 증빙서류: 소상공인 확인서, 사업자등록증와 상시근로자수 증빙 자료 등(택1)

③ 무급휴직자: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중 '20.3~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

* 개별 근로자의 동의(또는 신청)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 (통상임금 70/100)을 지급받지 않고 무급으로 쉬고 있는 자

- ①「항공사업법」상 '항공기취급업(항공지상조업), ②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항공기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기업 규모 기준 미적용

↳ 증빙서류: 개인정보제공동의 시 서류 제출 불필요, 다만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항공사업법 상 항공기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사본

2 자격 요건

<1> 소득 기준

- ①가구소득이 중위 150% 이하, ②신청인 개인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 ③신청인 개인 연매출 2억원 이하인 경우 지원(하나의 요건 충족 시 가능)
 - (가구소득) 주민등록표('20.5.7 기준) 상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 ('20.3~5월 중 가장 유리한 달의 기준 중위 소득)
 - * 가구원은 주민등록표 상 등재한 가구원 중 신청인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건강보험료 합산 (중위소득 150%는 홈페이지 또는 Q&A을 통해 확인 가능)
 - ↳ 증빙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의 시 서류 제출 불필요
 - (연소득) '19년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7천만원 이하
 - ↳ 증빙서류: ①소득금액증명원, ②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③그 외 입증 가능 서류(택1)
 - (연매출) '19년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2억원 이하
 - ↳ 증빙서류: ①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의 시 불필요), ②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서, ③세무대리인의 직인이 날인된 결산 재무재표, ④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⑤그 외 입증 가능 서류(택1)

3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 월 50만원 X 3개월분(총 150만원) 지원
 - 1차 100만원 2주내 지급, 2차 50만원(7월 중, 추가 예산 확보 후) 신청인 계좌로 지급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참여자는 해당 사업 지급 완료 후 지급)
- '20.6.1~7.20. 홈페이지(covid19.ei.go.kr) 및 모바일 페이지에서 신청 원칙(5.25(월)부터 모의 확인 서비스 제공)
 - 6.12(금)까지 2주간 5부제 시행 유의

출생년도 끝자리	신청일	출생년도 끝자리	신청일
1,6	6월 1, 8일	2,7	6월 2, 9일
3,8	6월 3, 10일	4,9	6월 4, 11일
5,0	6월 5, 12일	모두 가능	6월 6, 7일

- '20.7.1~7.20.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 후 오프라인 접수 가능
 - * 자세한 접수처는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예정

〈2〉 소득 감소 요건

- '20.3~4월의 평균 소득·매출이 비교 대상 기간('19년 월 평균 소득 또는 '19.12~'20.1월, '19.3~4월 중 특정월)의 소득·매출 대비 일정 수준 이상 감소

구분	소득·매출수준	소득·매출감소 비율
1구간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개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연매출 1.5억원 이하	25% 이상 감소
2구간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150% 이하 개인: 연소득 5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연매출 1.5억원 초과 ~ 2억원 이하	50% 이상 감소

- 비교 대상 기간은 '19년 월 평균 소득·매출, 직전 기간인 '19.12~'20.1월 중 특정 월 전년 동월인 '19.3~4월 중 특정 월 가운데 유리한 기준 적용
(예: '20.3~4월 평균소득 vs '19.12월, '20.3~4월 평균매출 vs '19년 월 평균매출)

- ↳ 특고·프리랜서 증빙서류 ①사업주로부터 소득 증명(수당수료 지급 명세서 등 또는 ②기타 소득 증명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거래 당사자와 거래한 통장 거래 내역서 등 택1)
- ↳ 영세 자영업자 증빙서류: ①매출 세금계산서 합계표, ②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신용카드 매출액 확인, ③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④매출액 입금내역 확인 가능한 사업자통장 거래 내역 사본 ⑤POS로 확인된 매출액 내역 ⑥세무대리인이 확인한 매출관련 서류(택1)

- '20.3~5월 중 일정 기간 이상 무급 휴직하는 경우

구분	소득수준	무급휴직일수
1구간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개인: 연 5천만원 이하	총 30일 또는 월별 5일 이상
2구간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150% 개인: 연 5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총 45일 또는 월별 10일 이상

* 고용보험 가입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영세 자영업자 소득·매출 감소 요건 (25~50%)을 갖춘 경우 지원, 영세 자영업자 소득 감소 증빙자료와 동일

- ↳ 증빙서류: 사업주 확인 무급휴직확인서

참고3**대상자 유형별 제출서류****① 공통제출(온라인 신청시 전산 기재)**

1.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가구원 포함)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4. 부정수급 관련 약약서
5. 연소득 입증서류
 - ① 소득금액증명원, ②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③ 그 외 입증 가능 서류(택1)

② 특고·프리랜서

1.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했음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①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제공 사실 확인서(재직증명서 등) 또는 ② 노무 제공 확인이 가능한 서류(용역계약서, 위(촉)탁 서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등 택1)
2. 소득 감소 여부 증빙이 가능한 서류
 - ① 사업주로부터 소득 증명이 확인된 서류(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사업주 발급) 등) 또는 ②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거래 당사자와 거래한 통장내역서 등(택1)

③ 영세 자영업자

1. 소상공인임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택1)
 - ①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② 사업장등록증과 상시근로자수 증빙 서류
2. 연매출액 증빙자료(택1)
 - ①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의 시 불필요), ②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서, ③ 세무대리인의 직인이 날인된 결산재무재표, ④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⑤ 그 외 입증 가능 서류(택1) *①의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로 갈음
3. 매출액 감소 여부 증빙이 가능한 서류(택1)
 - ① 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신용(직불·현금)카드 매출액 확인, ②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③ POS로 확인된 매출액 내역, ④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⑤ 매출액 입금내역 확인 가능한 사업자통장(또는 은행계좌) 거래내역 사본 등

④ 무급휴직자

1. 사업주 확인 무급휴직확인서
2.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항공사업법 상 항공기취급업 및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사본

◆ 서울시 노정교섭과 사회적 협약체결 요구

<<“코로나발 고용위기, 20대 국회는 실업부조 도입· 고용보험 확대하라”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0년 4월 29일(수)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

- 참가단체 : 도심제조노동조합연석회의, 민주노총, 알바노조, 전국여성노동조합, 참여연대, 청년유니온, 한국노총,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 코로나19 상황에서 고용보험가입 여부를 떠나 모든 실업자나 소득감소자에게 최소한의 요건만으로 ‘긴급실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 코로나19의 추가 유행 가능성과 이로 인한 취약계층의 고용과 생계위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특수고용·예수인 고용보험 확대 적용과 실업부조를 전면 확대 적용하는 법안을 우선 통과하는 것이 코로나19로 드러난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고용과 생계위기를 제도적으로 해결하는 시작이다.
- 20대 국회가 고용보험 전면 확대 적용과 실업부조 전면 도입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

- 사실 도심제조업노동자(봉제, 인쇄, 주얼리, 제화 등)의 노동조건을 살펴보면 다양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차이가 아니라 요구의 동일성에 주목하고 있음.
- 도심제조업노동자(서울도심제조노동조합연석회의)는 노동조건의 부분적 차이를 분명히 인식하면서도 이 문제의 핵심에 노정교섭과 사회적 협약체결이라는 연대와 공동의 요구가 있음. 단위사업장의 문제로 풀기에는 사업장 자체가 잘게 쪼개져 있거나, 기피, 혹은 회피하고 있는 법적 현실적 제도적 문제로 가로막혀 있음. 반복하자면 영세제조업의 경우에는 초과이윤을 나누기 어렵게 소규모화되어 있거나, 은폐되어 있음.
- 구체적으로는, 세금과 소득신고, 또한 어찌면 약한 고리, 취약한 고리임에 분명하다. 동시에 반드시 해결해야할 과제, 숙제임.
- 모든 영세도심제조업 종사자들은 <노동자>로서의 존재규명, 즉 <노동이력 증빙>, 다른 말로 하면 <소득증빙>으로 연결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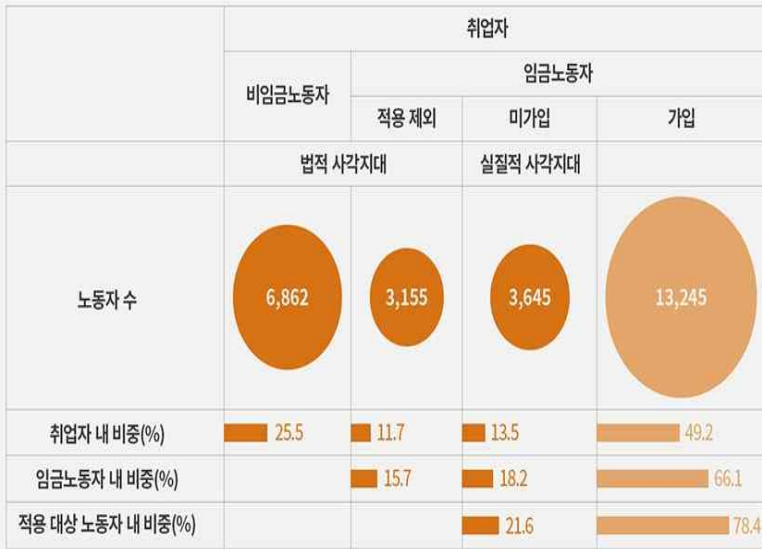
- 도심제조업노동자들 역시 너무나 당연히 <전국민고용보험제> 도입에 찬성한다. 현실적인 실업급여, 실업부조 지원 정책 역시 제때, 제대로 차별없이 실현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음.

<전국민고용보험제>의 실현을 위해, 코로나19위기극복을 위한 서울봉제인지회 및 서울도심제조노동조합연석회의는 다음과 같이 제안함.

- 첫째, 도심제조업 노동자들은 노동이력에 대한 증빙 권한을 노동조합에게 부여할 것을 요구한다. 이를 근간으로 해서 노동이력증빙카드 발급을 지원할 행정기관(건강보험공단이든 어디든) 혹은 광역센터의 설립을 제안함.
: 노동이력증빙제도 개선
- 둘째, 코로나19에 대한 지원 정책에 도심제조업 종사자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광역지자체에서 <지역고용안정기금><한시적 실업급여 혹은 실업부조> 정책이 병행 되어야 함.
- 셋째, 서울도심제조업노동조합연석회의는 이를 위해 서울시 노·정교섭을 통한 사회적 연대협약 체결을 요구함.
- 끝으로 실속있는 서울시 노정교섭과 중장기적인 도심제조 산업에 대한 노동정책과 산업활성화를 위해, 그간 한번도 제대로 진행된 적이 없는 봉제 및 인쇄, 주얼리, 제화 등 도심제조업에 대해 노·사·정이 함께 하는 <전면적 실태조사 사업(전수조사)>을 실시할 것을 제안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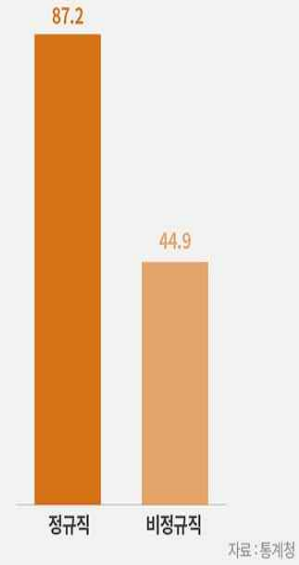
〈그림 1〉 고용보험 적용과 가입 사각지대(단위:천명)

자료: 장지연·박찬임, '사회보험 사각지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중심으로' <월간 노동리뷰> 2019년 11월호



〈그림 2〉 고용형태별 고용보험 가입률

(2019년 8월 기준, 단위:%)



〈그림 3〉 OECD 주요 국가의 실업자 수 대비 실업급여 수급자 비율(2016년 기준, 단위:%)

■ 실업보험 ■ 실업부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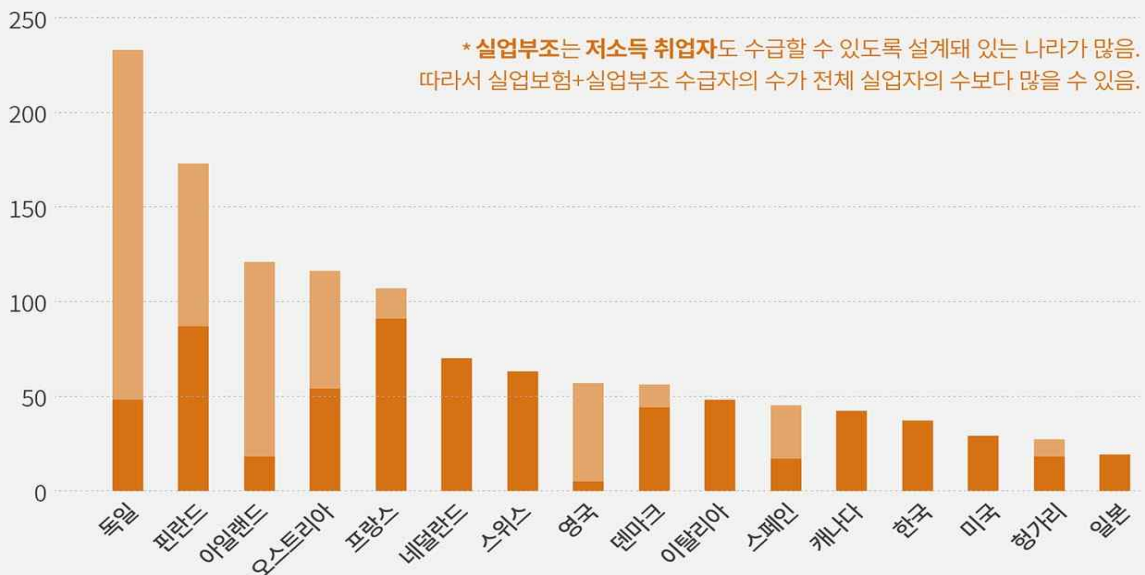


그림 출처 : 시사인제 656호

□ 줄어든 일감(수입 감소)

1년 성수기가 2월초부터 6월 중순, 8월 중순부터 11월초 이때가 봉제 성수기인데 코로나 유입으로 중국에 의존도가 큰 원사나 원단 수급이 원활치 못했고 동대문 시장 주변 중국이나 일본 관광객이 급격하게 줄어 정상적인 장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인터넷이나 온라인 등의 유통도 원단 수급 영향으로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조합원 대상으로 보면 평균 50%이상의 물량이 줄었거나 심한 경우 80%까지 줄었다는 말도 하십니다.

□ 봉제 종사자 직군별 피해 상황

- 사업주 - 전체적인 물량감소로 인한 인가공비 인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재단사 - 일이 일정치 않고 물량이 감소됨에 따라 평균 급여가 깎이거나 심한 경우 무급 휴직
- 객공미싱사 - 개수임금제라는 객공구조로 물량감소로 인한 작업 시간 단축이나 일이 없어 무급으로 쉬는 경우가 많다.
- 월급미싱사 - 월급제임에도 불구하고 영세한 사업 특성상 일이 없어 쉬는 경우 쉬는 날을 제하고 월급을 받거나 줄어든 월급으로 받는 경우가 많다.
- 일당종사자 - 요즘 봉제의 어려움을 나타내는 현상으로 꾸준하지 않은 일감으로 건설노동자처럼 한 곳에 얽매이지 않고 일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며 하루 임금을 일당으로 받는 경우가 많아지고 이 경우도 쉬는 날이 많아 수입이 대폭 줄어들었다.

□ 봉제 영세 사업장 증가

재단사 또는 실장이란 이름으로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경우 나이가 들어 안정적인 직장생활이 유지되기가 힘드므로 영세 사업장 특성상 적은 자본으로 공장 운영이 가능한 까닭에 다시 영세 사업주가 증가하는 경우와 공장 유지가 힘든 경우 버틸 만큼 버티다가 공장을 내놓는 경우도 많아 폐업과 창업이 비슷하게 유지되어 사업장 수에는 큰 변화가 없다.

□ 일감 확보 관련 을과 을의 과도한 경쟁

가장 심각하게 모두가 인식하는 구조적 문제로 임가공비를 정할 때 가장 낮은 금액의 임가공으로 책정해서 생산을 하는 구조로 사업주는 공장을 놀릴 수 없어 낮은 단가, 저평가된 임가공으로 울며 겨자 먹기 식의 운영을 하고 한 공장의 종사자 즉 미싱사들도 동료 미싱사들과 한정된 일감을 두고 경쟁이 심하다보니 더 일찍 더 늦게까지 일하는 구조가 되어 일이 있을 때 장시간 노동이 고착화되었다.

□ 코로나로 인한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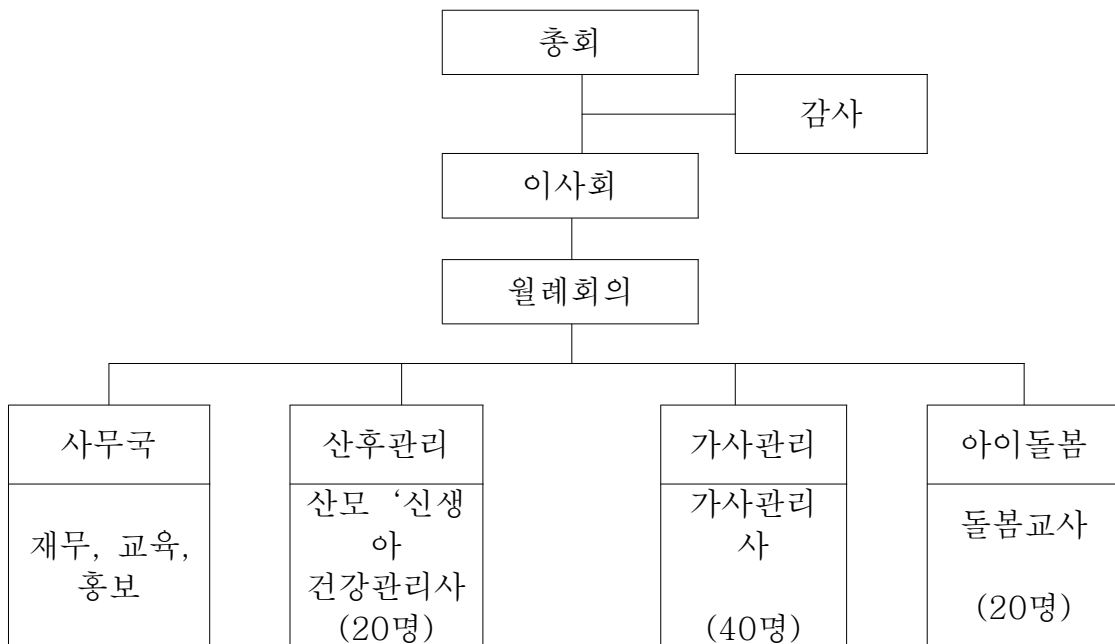
코로나 영향으로 서울시나 정부의 각종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9만 봉제 종사자들은 4대보험 80%이상 미가입 상태로 노동 이력 증빙이 사실상 불가능한 까닭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이외에는 그 어떤 지원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코로나 영향으로 1년 중 성수기인 일감 부족으로 인한 생산 수익 감소가 큰 업종인데도 불구하고 그 어떤 지원책에서도 제외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집담회 :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피해사례와 사각지대 제로(0)운동의 방향

□ 사회적협동조합 행복한돌봄소개

- 연혁 : 2008년 비영리단체 일자리 사업단으로 출발하여 현재 2014년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법인격을 취득하고 활동중이며 사단법인 한국가사노동자협회 소속 지부로 활동중임
- 설립목적 : 경력단절여성들의 일자리 창출과 믿을 수 있는 안심 돌봄을 통하여 조합원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이용자에게는 좋은 돌봄을 제공하는 활동중임
- 주요사업 및 활동인원



활동부분	활동내용
가정내돌봄 서비스	산후관리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영양관리, 정서지원, 일상생활지원, 산전관리
	가사관리 : 정리·청소·세탁·설거지·음식조리·다림질
	아이돌봄 : 등·하원돌봄, 정서지원, 영양관리, 신체발달, 일상생활지원
교육사업	내부교육 : 가정내돌봄서비스전문가 양성교육
	외부교육 : 돌봄서비스신입양성 및 경력자역량강화교육
인식개선활동	돌봄노동자 인식개선 캠페인
	지역사회공헌(장애인자립생활시설 정리정돈사업)
지역네트워크	사회적경제영역/ 민간네트워크

□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사례

○ 주요사업의 피해사례

활동부분	활동내용	2-4월 피해사례
가정내돌봄 서비스	산후관리	신규 : 2019년대비 80% 감소 기존 : 30% 감소
	가사관리	
	아이돌봄	
교육사업	내부교육	구직자문의 ↑, 교육 100% 취소
	외부교육	100% 취소
인식개선활동	돌봄노동자 인식개선 캠페인	모든 활동 중단
	지역사회공헌(장애인자립생활시설 정리정돈사업)	
지역네트워크	사회적경제영역/ 민간네트워크	

○ 사업별 어려움 및 피해사례

1. 산후관리

- 활동의 어려움 : 산모와 아이가 함께 있는 공간으로 안전문제로 인해 이동시 착용했던 마스크교체와 업무 중에도 마스크를 착용을 원하는 산모의 증가로 체력소모와 피로도가 높았음. 자차 이용 출근을 원하거나 근거리 관리사 요청으로 예약에도 제약사항이 많이 확대됨
- 경제적 어려움 : 감염병에 취약한 산모와 신생아 돌봄에 산후관리 서비스이용 대신 가족간의 돌봄으로 산후조리를 진행하며 보건소 예약과 제공기관의 전체 예약건수가 4월에는 급격한 감소를 보이며 기관과 관리사의 운영비와 급여 감소
- 정부바우처사업의 산후관리사는 4대보험은 가입되어 있으나 호출형 업무의 특징으로 일한만큼만 급여가 지급되는 구조임. 예약은 줄어 급여는 줄고 있으나 사대보험을 유지하고 있으니 실업급여의 대상도 안 되고 특고, 프리랜서의 지원대상

도 안 되는 역설을 지니고 있음. (동일업종 : 요양보호사)

2. 가사관리

- 활동의 어려움 : 어린자녀 혹은 어르신이 댁에 있는 경우 안전의 문제로 인하여 상황이 완화될 때까지 대기를 희망하였으며 서비스를 진행하더라도 아이들의 학습시간배려등으로 청소용품사용을 시간 맞춰 진행하거나 역시 마스크착용의 어려움으로 체력소모와 피로도가 높았음
- 경제적 어려움 : 평균 30% 소득감소가 이루어졌으나 다수의 고객을 관리하는 특성상 고객 중 부분적으로 유지하는 고객이 있으면 주2회 일을 하더라도 타업종의 업무를 병행하여 할 수 없었음

3. 베이비시터

- 활동의 어려움 : 어린아이를 돌보는 업무특성상 개인위생과 대중교통이동에 대한 위험부담증가로 서비스종료 증가.
여행업 등 코로나19의 영향을 받는 산업에 종사하여 소득이 감소한 보호자의 재택근무가 증가하며 서비스종료가 나타남
- 경제적 어려움 : 한 고객이 고정되어있어 고객이 서비스를 취소하면 오롯이 실업의 상태가 되어 소득이 100%감소하는 상황임.

※ 가사관리와 베이비시터의 경우 신규고객은 한건도 없을 만큼 급격히 위축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특별지원제도

1.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업주 지원사업 관련

구분	내용	비고
고용유지지원금 (휴업수당)	상시5인이상, 영업중단 시 평균임금의 70%지원	호출형근로의 특성상 완전 휴업은 아님
사회적경제기업 임대료 지원사업	10인 미만, 협동조합1년이상활동한 협동조합 지원	선정
고용'산재보험 납부기한 연장	30인 미만, 특수고용직종사자 연장	연장
산재보험료 경감	30인 미만 사업장, 자동신청	차등지원받음
건강보험료 경감	30인 미만 사업장, 자동신청	감면받음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예외	근로자 동의 받고 최대 3개월	납부예외로 신청하지 않음

2.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동자 지원사업 관련

구분	내용	비고
여행바우처	서울시 거주, 비정규 특수형태 근로자 * 코로나19로 인한 지원사업은 아님	7명 지원/ 7명 선정
서울노동인권복지네트워크	현물 마스크지원(일회용, 리필용)	전체 조합원전달
생활안정자금(유자)	프리랜서, 플랫폼 특수형태근로자	이후 상황을 해야 하므로 부담됨
서울시 특수고용 '프리랜서 특별 지원금	재난생활비와 중복수혜 가능, 간소한 서류	4명지원/ 결과대기중
토닥토닥 긴급생계비지원	20년 1월 1일 이후 실직, 건강보험료확인	중고령 조합원으로 미성년자 자녀가 없음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프리랜서 생계안정자금지원/ 서울시 특고지원과 유사하며 중복 시 차액지원	첨부서류 등 확인 중

○ 특별지원금 현장적용 사례 및 제언

1. 현장적용의 어려움

- ① 호출형근로의 어려움 : 고용된 산후관리사의 경우 현재 배정된 업무가 없어도 언제든지 신규고객의 호출상황이 발생하면 서비스가 진행되므로 휴업과 영업중단으로 보기는 어려움/ 또한 열악한 협동조합의 운영상 휴업수당 중 기업부담과 사회보험을 감당하기 어려움
- ② 진입장벽의 어려움 : 자격요건을 확인하는 대부분이 가구 소득수준과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생계를 함께하는 부부의 소득외에 따로 살고 있는 자녀의 소득으로 영향을 받아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됨
- ③ 위기상황 반영이 늦음 : 지역의료보험의 경우 지난해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어 있으며 부과된 의료보험료 기준에 맞지 않아 제외됨
- ④ 엄격한 기준선의 불합리성 : 소득감소액 30%기준, 기준에 1~2% 미달되어도 신청을 신청의 기회를 갖지 못함

2. 제언

- ① 상담창구 필요 : 다양한 제도가 발표되는 가운데 당사자의 조건이 맞는지 여부와 서류준비에 어려움이 있음. 당사자에 조건을 고려해 지원제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상담창구가 필요하며 가능하면 서류접수까지 안내필요
- ② 자격요건의 완화로 생계를 함께하지 않는 가족의 소득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또한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세대주 중심으로 지원되는 문제점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어려움에 기초하여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함
- ③ 긴급시기에 맞는 시스템으로 지역의료보험의 일시적인 완화등에 발빠르게 대응하는 현실적인 지원이 되어야 하며 특수고용의 경우 등록된 앱을 캡처하여 첨부하는 방식등은 바람직하다고 봄

코로나19 관련 요양보호사 실태 및 지원정책 제안

2020. 6. 03.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 요양보호사 고용과 근로조건의 특수성

▶ 요양보호사 현황

- [전국] 재가 34만 6,149명, 시설 6만 9,472명 (보건복지부, 19년 3월 31일 기준)
- [전국] 자격증 발급 현황 총 162만 7871명 (보건복지부, 19년 3월 31일 기준)

▶ 장기요양기관 현황

- [전국] 노인장기요양기관 총 21,290개소(2018년 기준)
설립주체별로 개인이 81%, 법인 18%, 지자체 1%

▶ 요양보호사 노동실태

- 재가 요양보호사의 경우, 시간제 비정규직으로 낮은 임금, 불안정 고용, 비자발적인 실업이 심각하며, 시설 요양보호사의 경우, 교대제에 따른 인력 부족, 고 강도노동에 처해있음. 재가 시설 요양보호사 모두 성희롱 및 폭언, 근골격계 질환 등 산업재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젠더그래픽스(2018)에 따르면, 재가요양보호사 월평균 임금이 1인 기준 중위소득(1,672,105)의 53% 수준에 그침. 현재 임금형태와 희망하는 임금 형태의 격차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는데, 현재 시급제 96.7%, 월급제 3.3%이며, 희망하는 임금 형태는 시급제 29.9%, 월급제 70.1%임. 재가장기요양기관에 바라는 점은 일자리 끊어지지 않도록 연결하는 67.3%, 서울시와 정부에 가장 바라는 점은 '임금 산정 방식을 월급제로 변경' 67.6%로임.
- 요양보호사 급여 및 노동시간

급여종류	요양시설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최저임금	생활임금
월급여	157만원	151만원	91만원	157만원	192만원
시급	7,606원	7,508원	8,382원	7,530원	9,211원
노동시간 (주휴포함)	2017시간	201시간	108시간	209시간	209시간

(※출처: 서울복지재단 서울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방안 연구, 18년 기준)

○ 코로나19 일자리 피해 실태조사 결과

코로나19 관련 요양보호사 실태조사 결과(요약) (4/23~29)

1. 개요

본 실태조사는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가 2020년 4월 23일부터 29일까지 총 5일에 걸쳐 진행하였으며, 4개 권역센터(서북, 서남, 동북, 동남)에서 동시에 진행되었다.

2. 참여인원

본 실태조사에 참여한 사람은 현재 요양보호사로 재직하고 있는 3,456명이 참여하였다.

3. 내용

1. 일반적특성 (3,456명)	
1-1. 성별	여성 3,248명(94.0%), 남성 119명(3.4%), 무응답 89명(2.6%)
1-2. 연령대	60대 1,766명(51.1%), 50대 1,084(31.4%), 70대 357명(10.3%), 40대 178명(5.2%), 30대 27명(0.8%), 20대 18명(0.5%), 80대 12명(0.3%)
1-3. 거주지	서울특별시 3,361명(97.3), 경기도 53명(1.5%), 인천시 2명(0.1%), 무응답 40명(1.2%)임. (서울시 자치구 중 "노원구" 453명(13.1%)로 가장 많았으며, "강북구: 442명(12.8%), "성북구" 363명(10.5%) 순으로 많았음.)
1-4. 근무지 형태	재가·방문요양 3,107(89.9%) , 시설(요양원 등) 117명(3.4%) 임.
2. 코로나로 인한 갑작스러운 일자리 중단경험(3,456명)	
→ 중단 경험이 있다 714명(20.7%), 중단 경험이 없다 2,715명(78.6), 무응답 27명(0.8%)	
2-1. 중단기간 (714명)	1달 이상 313명(43.8%) 10일 이상 30일 미만 184명(25.8%), 1일 이상 5일 미만 117명(16.4%), 5일 이상 10일 이상 90명(12.6%), 무응답 10명(1.4%)임
2-2. 중단정도 (714명)	일부 중단 539명(75.5%), 모두 중단 147명(20.6%), 기타 21명(2.9%), 무응답 7명(1.0%)
2-3. 중단사유 (714명)	이용자 또는 가족의 통보 523명(73.2%) 본인의 이사(감염우려 등) 121명(16.9%), 기관의 요청 61명(8.5%), 무응답 9명(1.3%)
2-4. 조치사항 (714명)	대기조치(무급)가 504명(70.6%), 서비스 재연계 94명(13.2%). 기타 56명(7.8%), 자발적인 퇴사 강요 (사직서 작성 등) 23명(3.2%), 기관의 일방적인 해고 19명(2.7%)
3. 방역물품 지원현황 (3,456명)	
→ 마스크, 손 소독제 등의 지원이 있었다 2,295명(66.4%), 지원이 없었다 1,079명(31.2%), 금액을 지원받았다 53명(1.5%), 무응답 29명(0.8%)	
3-1. 방역물품 지원횟수 (2,348명)	1~2회 1,916명(81.6%), 3~5회 280명(11.9%), 6~10회 58명(2.5%), 10회 이상이 79명(3.4%), 무응답 15명 (0.6%)
4. 감염우려에 대한 불안(3,456명)	
→ "(매우)그렇다" 1,901명(55.0%), "보통" 698명(20.2%), "아니다" 538명(15.6%), "전혀 아니다" 306명(8.9%), 무응답 13명(0.4%)	
5. 일자리중단·소득감소에 대한 불안(3,456명)	
→ "(매우)그렇다" 1967명(37.7%), "보통" 546명(15.8%) "아니다" 666명(19.3%), "전혀 아니다" 247명(7.1%), 무응답 30명(0.9%)	
6. 고용안전 대책으로 가장 원하는 것(3,456명)	
→ "정부차원의 지원금 (실업 요양보호사 고용안정지원금, 무급휴직자 지원금 등)" 1,589명(46.0%) "줄어든 근무시간에 상응하는 휴업수당 지급" 789명 (22.8%) "실업급여 지급" 521명(15.1%), "해고금지" 433명(12.5%)	

(※ 출처: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실태조사결과보고자료(2020.05.))

○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피해 사례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코로나19 요양보호사 노동상담 사례

1) 요양보호사 일자리 중단, 생계 위협

■ 어르신, 보호자로부터 서비스 중단 요청

<코로나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나오지 말라는 갑작스러운 통보>

“아무 문제없이 잘 일하고 있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가족보호자가 코로나 종료될 때까지 어르신 댁에 오지 말라고 센터에 통보했어요. 센터에서는 다른 어르신 연결해준 다더니 당최 연락이 없어요...”

■ 장기요양기관의 일방적인 통보

<무급휴직 동의서 강요, 일방적인 인원 감축 통보, 개인사정으로 인한 사직서 강요>

“제가 일하는 센터에서는 직원들한테 무급휴직 동의서 서명을 요구했어요. 코로나 때문이라면서 서명하라는데... 참 어이가 없었어요.”

“전월 급여 받으려면 사직서에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직이라고 쓰라고.. 강요했어요.”

■ 생계 어려움 등 경제적 위협에 노출

“방문요양보호사는 오전 1집, 오후 1집 이렇게 일을 하는데 코로나로 갑자기 오전에 돌봐드리던 어르신 집에서 오지 말라고 연락이 왔어요. 일자리가 중단되니까 수입이 바로 절반으로 줄었어요. 안그래도 지내기 빠듯한데... 정말 살기 힘드네요.”

2) 요양보호사 감염우려 등 건강권 사각지대

■ 기본적인 방역물품 부족

“코로나19 요양보호사 행동지침에 보면 어르신 댁 갈 때마다 마스크를 교체하라는데 마스크 한 장에 최소 1,500원이에요. 그런데 최저시급으로 임금을 받는 우리들은 개인비용으로 마스크 구입하는게 너무 큰 부담이죠. 코로나 19로 우리도 불안하고 어르신들도 불안해하시는데 요양보호사 마스크 지원은 없고.. 현장에서 어르신들을 어떻게 돌봐드리고, 저희 건강은 어떻게 지켜야 될지 모르겠어요.”

■ 어르신의 마스크 벗으라는 요구

“마스크를 쓰고 일을 하는데, 치매 어르신이 마스크를 벗으라고 요구했어요. 벗을 수 없다고 하니 그만 나오라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근무하는 센터장이 감염예방을 위해서 써야하는 부분에 대해 설명 드리긴 했으나, 더 이상 방문 하는걸 원하지 않으셔서 2월 중순까지 근무하게 되었고요... 기관에서 다른 이용자로 연계를 해주려고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새로운 이용자가 많이 생기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 요양보호사 어르신 대리처방으로 병원 방문...여러집에 방문하여 일하는 두려움

“한 어르신에 갔는데 보호자인 아들이 대리처방을 부탁했어요. 그 집이 오전이었고, 그 다음집에 방문하는 오후 집 어르신이 91세라서 병원에 가는게 좀 찝찝하더라고요. 그런데 가족이 못 가겠다고 하니, 마스크 꼼꼼히 써서 병원에 가서 약을 대리 처

방해 왔습니다.

그 다음 오후 집에 갔더니 91세 어르신이 오전시간에 공원에 나가서 한나절을 앉아 계셨어요.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어르신들은 특히 외출을 삼가야 한다고 당부 또 당부하고, 옷 마다 마스크도 넣어 놓고 나왔는데.. 분명 외출을 하셨을 겁니다... 병원 가기 두려운 보호자 대신 병원에도 가야 하고, 충분히 말씀 드려도 외출하기 좋아하는 91세 어르신을 돌보는 게 하루하루 살얼음판 같죠.”

(※ 출처: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노동상담사례(202.05.))

○ 코로나19 요양보호사 일자리 피해 지원정책 제안

▶ 요양보호사 등 방문 돌봄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측면에서 정책방안 마련이 필요함. 시간제비정규직의 불안정한 일자리 특성상, 요양보호사의 코로나19 일자리 중단은 소득 감소 및 생계 위협으로 이어짐. 또한 초밀접 대면서비스를 수행하는 요양보호사 등 사회서비스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방안이 필요함. 지속적인 방역물품 지원, 현장 적용 가능한 감염병예방 현장 매뉴얼 및 기관 조치 등 개인적인 노력 이외 기관 및 공공영역에서의 방안 마련 시급함.

1) 장기요양의 공공성 강화

: 공공요양기관 확충 및 방문요양보호사 등 시급제 돌봄노동자에 대한 노동조건 개선 (월급제 및 생활임금 도입 등)

2) 감염병 대응 요양보호사 등 사회서비스노동자 돌봄현장 건강권 보호방안

: 방역물품 지속적인 지원, 감염병 예방 교육, 감염병 대응 돌봄현장 매뉴얼 (개인, 기관)

3) 방문요양보호사 등 방문돌봄노동자의 실직 및 휴업에 대한 고용유지

: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정책개선 (신청기준 완화 등)

■ 현황

- 4/1 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을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수당의 90%까지 상향하는 근거 마련”에 따르면 모든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은 20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제 휴업, 휴직을 시행하고 휴업, 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5월부터 휴업수당의 90%까지 지원이 가능함.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장기요양기관에서 발생하는 휴직이나 실업이 어르신 사망이나 시설 입소, 보호자의 종사자 교체요구 등 예기치 못한 경우가 많아, 위의 제도처럼 사전조치, 휴업사유의 입증, 시간제의 경우 부분휴업 등은 증빙 어려운 부분 존재함.
- 장기요양기관의 불규칙하고 예기치 못하는 휴직 및 실업의 특성 고려하여 신청절차 및 서류 완화할 필요 있음.

4)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제도_요양보호사 포함필요

■ 현황

- 4/1 고용노동부 “4월부터 무급휴직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고용, 생활안정 지원사업 시행. 이에 따라 영세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의 고용,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을 시행

지역 내용	서울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 특수고용 종사자/ 프리랜서
지원내용	가구당 50만원 지급 (2개월 지원)

직종	방과 후 교사, 대리운전, 문화센터·스포츠강사(트레이너), 보험설계사, 공연관계자, 관광서비스(운전·가이드 등) 종사자
건보료 부담금	중위소득 100% 이하
자격기준	특고·프리랜서임이 입증/ 노무미제공/ 소득감소가 확인된 자
신청기간	이메일 접수 05.06~05.22/ 방문접수 5.11~05.22
신청서류	1. 특별지원비 신청서 2. 특수고용 및 프리랜서 자격확인 서류 3. 노무미제공확인서 또는 입증서류 4. 건강보험자격확인서 5. 가구원 전체 보험료 납부확인서 6. 주민등록등본 7. 고용보험자격득실확인서 8. 통장사본 9. 개인정보처리동의서 10. 공공재정 부정수급 관련확약서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의 경우, 월 60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이거나 만 65세 이상인 고령자여서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많은 수에 달함.
-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중단이 20.7%에 달할 정도로 코로나19 피해가 심각함.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의 취지를 고려할 때, 지원직종에 요양보호사를 포함하는 것이 필요함.

코로나19로 특수고용노동자에 미친 영향과 과제

-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1. 코로나19 광풍으로 드러난 특수고용노동자들의 현실

1) 생계위기로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자

○ 노동기본권/사회복지의 사각지대에서 대책 없이 생계 위기에 내몰린 특수고용노동자(별첨1)

○ 지금까지는 직종마다 온도차이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대부분의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

- 방과 후 강사 / 공연 예술노동자 등 : 수입 전무
- 대리운전/퀵서비스/학습지 노동자 등 : 급격한 수입 감소
- 화물 / 건설기계 등 : 이후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

○ 정부도 기업도 책임지지 않는 특수고용노동자의 생존권

- 대다수 대면서비스 노동임에도 코로나19 감염위험에 방치
- 업체들은 이윤보전을 위하여 특수고용노동자에게 비용 전가
: 우체국 택배 운송수당 삭감 / 배달 수수료 인상
/ 대리운전 보험료 인상, 요금인하 경쟁

2) 「긴급생계지원」에서 들어난 정부 정책과 행정 시스템의 한계

○ 현실을 외면한 지원 대상과 턱없이 부족한 규모

- 1차 대책 : 「코로나19 지역고용특별 지원」(특고 14.2만명, 1,073억)

❶ (사업개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일을 수행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라 함) 및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지원

- ② (지원대상)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서비스가 어려워진 직종 중심으로 자치단체가 선정
- ① 교육 관련: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등
 - ② 여가 관련: 연극·영화 종사원,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 ③ 운송 관련: 기타 자동차 운전원(대리운전원), 공항·항만 관련 하역종사자 등

< 산재보험 적용 특고 직종(9개) >

▲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는 업황을 고려하여 가급적 제외)

○ (요건) 신청일 전 3개월 동안 용역계약서, 위촉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로 특고·프리랜서임이 확인된 자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 국가 감염병 위기 정보 수준 “심각” 단계(‘20.2.23.) 이후 휴업 등의 사유로 5일 이상의 노무 제공을 하지 못한 자

③ (지원내용) 무급휴직 대상 근로자 지원 수준을 고려하여 일 2.5만원, 월 최대 50만원 지원

* 근로자와 달리 노무제공 시간(일)을 산정하기 어려움을 감안, 노무제공 시간(일)과 관계없이 모두 동일하게 일 2.5만원 지급

** 소득요건 등은 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추가 설정 가능

고소득자(예: ①소득 상위 10% <월 8,752,000원 이상> 또는 ②연소득 7,000만원 이상) 지원 제외 가능

*** 복지부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자는 동 사업을 우선 활용

④ (지원기간) 일하지 못한 날수 기준 총 40일(약 2개월)

* 노무 미제공일수가 20일을 초과하더라도 월 최대 50만원 지급

- 2차 대책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93만명, +1.5조원)

○ (대상)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일정소득 이하 영세 자영업자, 특고·프리랜서, 무급휴직자 등

○ (요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소득 및 매출이 급격히 감소

○ (지원 내용) 월 50만원 × 3개월

: 10% 내외를 지원 대상으로 함. 특수고용 250만(220만, 노동연구원) + 560만 자영업자의 83%가 영세자영업(465만) + 무급휴직자 ?

: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지원 액수 :



- 일이 50% 줄었을 경우 : 순수입은 590,200으로 927,800 감소, 지원액은 250,000만원
- * 소득 25~50% 감소 → 10일분(25만원), 50~75% 감소 → 15일분(37.5만원), 75~100% 감소 → 20일분(50만원) 지원

○ 현실성이 없는 지원 기준

- 지원대상의 비현실성(산재보험 특례적용 대상)
- 휴업기준으로 인한 역차별
- 지원 요건 :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요건으로 함.

○ 전달체계에서 들어난 행정시스템의 공백

- 지자체에서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파악이 전혀 안되어 있음.
- 홍보부족/지원절차의 어려움/ 창구의 협소함으로 실질적인 배제 심각

2. 특수고용노동자의 요구와 대책

1) 실효성 있는 생계 대책 : 정부 지원대책, 제/대/로!

- 지원규모의 확대와 절차의 간소화
- 전달체계의 내실화

2) 고용보험의 전면 확대 : 고용보험, 모/두/예/계!

- 20대 국회에 고용보험개정안 상정되었으나 무력화
-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한 것은 의미가 있으나 고용유지지원금은 제외한 한계

3) 노동기본권 보장 : 노조법 2조 개정, 지/금/당/장!

- 당사자의 의견과 참여보장
- 노조 할 권리(노조법2조 개정)

[별첨1 : 코로나19 특수고용노동자 현장실태]

- 413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 기자회견 자료

근로계약서 (X) 4대 보험 (X) 노동3권 (X)

코로나19 재난 상황은 노동권 사각지대 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떨어뜨렸다

● “30대 중반 보험설계사입니다”

코로나 확산 이후 고객과 약속 잡기도 힘들고 잡힌 약속도 취소가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심지어는 각종 부담때문에 보험 해지 상담을 하는 분들도 많아져서 대부분의 설계사들이 최소 50~90%이상 수익이 줄었어요. 일부 회사에서 손소독제를 비치하는 경우는 있는데, 가장 중요한 마스크는 아무 지원이 없네요. 정부가 특수고용노동자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 그 기준이 ‘노무 미제공일’이라고 해요. 그게 사무실에 출근은 했는데 계약이 없는 경우인지, 사무실에 아예 출근을 안해야 하는건지 아무 기준도 없고요. 저 같은 경우도 사무실에는 계속 출근은 하는데 고객을 못만나니 수입은 없고, 정부 지원 대상인지 알 수가 없어 답답하기만 해요.

● “저는 예술강사입니다”

지금 학교 예술강사들은 지속되는 개학 연기로 4개월째 강사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술강사는 비정규직 계약직으로 수업한 시수로 강사료를 계산해 받습니다. 수업을 하지 않으면 수입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온라인 수업을 시작한다지만 예술 수업은 대부분 온라인 수업이 불가능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오프라인 수업은 언제 시작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자신들이 계약한 수업을 다 진행할 수 없는 처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예술강사는 프리랜서나 특수고용직으로도 분류되지 않아 정부에서 내놓는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술강사가 특수고용직이나 프리랜서보다도 수입이 낮은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요구합니다. 빨리 근로계약을 하고 자신이 계약한 시수에서 매달 10%의 강사료를 지급하라고 말입니다. 수업이 취소되더라도 휴업수당으로 생각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또, 정부도 저희 같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 직종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저희는 방송작가입니다. 방송가의 특수고용노동자죠”

무늬만 프리랜서라서 대부분 회사의 업무지시에 따라 일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방송작가들의 고충을 꺼내기가 쉽진 않아요.

하지만 오늘은 얘기할게요 방송을 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대부분의 방송이 '코로나19 대응체제'로 긴급전환되고 있어요 모두다 알다시피 코로나19 특집 프로그램, 뉴스 속보 등이 편성되고 있죠. 그런데 그 시간을 채우고 있었던 기존의 프로그램들은 모두 어디로 갔을까요? 잠정중단 되거나 조기종영을 맞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의 프로그램은 최근의 사회적인 분위기와 거리가 있다는 이유로 제작 중단된 경우가 많고요 그에 따른 일자리도 사라졌습니다. 지역 방송사 같은 경우는 한 달 가량 정규방송이 죽거나 재방송으로 대체된 경우도 있어요. 외주 제작사들의 현실은 더욱 심각합니다.

많은 제작팀들이 신규 프로그램을 기획하면서 섭외, 기획, 대본, 촬영을 진행하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 방송날짜가 하반기로 연기되면서 수입이 끊어졌어요. 운 좋게 일자리가 생겨도 이런 현실을 아는 제작사들은 임금을 깎거나 업무강도를 높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일자리 구하는 사람 많으니, 제작사는 아쉬울 것 없다." 회사에서는 상황이 좋아 질때까지 '대기'하라고 애길해요. 이걸 방송작가의 용어로 해석하자면 한동안 '수입이 0원'이란 뜻입니다. 저희도 집세를 내야 하고, 밥을 먹고 살아야하는데 기약없이 버티기가 너무 힘드네요. 사실 코로나19뿐만이 아닙니다. 방송작가들은 천재지변, 올림픽, 아시안게임, 정상회담, 선거 등등... 특수한 상황이 생기면 수시로 일자리를 잃습니다. 앞으로 방송에서 긴급한 특집 프로그램이 나가면 원래 그 시간대에 있던 작가들은 '수입이 0원'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알아주셨으면 해요.

정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특수고용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은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을 위한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지만 제출해야하는 서류구성에 현실성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방송사와 제작사들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방송작가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또한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대상에서는 특수고용직이 포함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인 방송작가들은 돌봄조차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성실히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지만 정작 국가적 재난 사태에서는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는 방송작가들.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저희는 언제까지 숨죽이고만 있어야 하나요? 국가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방송작가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의 입장을 더욱 면밀히 파악하고 정책 또한 신속하게 집행해주길 바랍니다.

● “초등학교에서 논술을 가르치는 방과후강사예요”

코로나 이후 2월부터 수입이 전혀 없어요. 앞으로 두어 달도 없을 것 같아요.

생계가 막막해서 대출을 받으려 해도 개인사업자등록증이 없어서 안 된다고 해요.

코로나19 지역 특별지원금은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서 받을 수 없다 하고요.

학교와 계약서를 쓴 상태인데 언제 개학할지 몰라서 다른 곳에 아르바이트도 못 하고 있어요. 학교의 지시를 받고 학교가 정한 장소와 시간에 학교가 정한 수업을 하고 정해진 급여를 받아요. 그런데도 노동자가 아니라며 실업급여나 휴업수당 같은 게 아무 것도 없어요.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요?

● **“나이 50을 바라보는 퀵서비스 기사입니다”**

코로나 이후 콜이 40% 감소했고, 그만큼 수입도 줄었어요. 그 전에는 하루 열심히 뛰면 월 150만원은 벌었는데 지난 달에는 70만원이 전부였어요. 이달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오토바이 책임보험도 내야 하는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대면업무를 하는데, 마스크 지급을 책임지는 회사도 없어요. 지자체에서 나눠준 걸 겨우 쓰고 있어요.

정부가 특수고용 관련해서 지원금을 준다고 해서 노동청에 찾아가보니 준비해야 할 서류가 너무 많더라고요. 퀵서비스기사는 평균연령이 60세 이상이거든요. 탁상에서 일 보는 분들은 이런저런 서류들 쉽게 작성하지만, 오토바이 타는 퀵서비스 기사들은 힘들어요. “

● **“화물자동차 운전기사입니다”**

코로나 이후 수출입 물량이 30% 이상 줄었어요. 화물노동자들은 그달 운임료가 30~90일 지나서 지급되기 때문에 본격적인 피해 여파는 앞으로 더 심해질 거예요. 생활비도 문제지만 화물자동차 할부금, 이자를 매달 250만원 납부해야 해서 고정지출이 가장 큰 문제예요. 할부금, 이자를 연체하면 생계수단인 차량을 압류당해 일을 하지 못하게 되고 신용불량자로 낙오되면 삶이 파탄나는 거죠. 정부에서 특수고용 지원금을 준다고 하는데 알아보니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한 사람만 된다고 했어요. 화물노동자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적용이 안되서 대상이 안된다고 했죠.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종료된다고 해도 바로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는 않아요.

● **“저는 가가호호 가정방문을 하는 학습지교사예요”**

학습지교사 20년 동안 코로나19 같은 사회적 재난 상황은 처음이에요. 임금이 반토막 났어요. 방문 수업을 하기 때문에 하루 8시간 꼬박 마스크를 착용해요. 마스크를 하루에 1개씩 사용하는데 2~3월 두달동안 회사에서는 마스크 8개만 지급 했어요.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금을 준다고 선전하는데, 학습지교사가 실제 받을 수 있는 지원기준을 마련한 곳은 없어요. 특수고용노동자라 4대 보험이나 상여금, 퇴직금은 꿈도 꾸지 못하고 월 소득 200만원도 받지 못하는데 건강보험료 적용 기준상 지급 대상도 안 된다고 하더군요. 어이가 없어요. 정부는 지원에도 사각지대를 만들어 놓았더군요.

● “저는 대리운전 기사예요”

코로나19 이후 업체 콜이 지역에 따라 50~70% 줄었고, 수입도 절반 이하로 급감했어요. 업체는 보험료, 프로그램비, 관리비를 꼬박꼬박 떼어가면서 마스크 한 장, 손소독제 한 개 지급하지 않네요. 노조에서 한시적이라도 수수료를 감면하라 요구했지만 업체는 묵묵부답이에요. 업체는 우리가 노동자가 아니라며 책임을 회피해요.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대면 업무 노동자에게 마스크 300만 장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는데, 대리운전 기사는 여기서도 제외됐어요. 특수고용직에게 준다는 지원금도 10만 명을 대상으로 해 전국 250만 특수고용노동자 수에 턱없이 부족하고요. 처음에는 무급휴직자들에게만 지급하겠다고 했다가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서야 소득감소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바꾸는 등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도 못하고 있어요.

예산, 기준, 기간을 확대하고,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이 필요해요.

● “저는 50대 후반 25인승 영업용 셔틀버스 노동자예요.”

코로나19로 유치원, 학원 운행 선 지 한 달이 넘었네요. 유치원은 멈췄고, 그나마 학원을 운행한 날이 있어 3월분 임금의 50%를 받을 수 있었어요. 4월은 아예 무급이 될 판입니다. 차량 관리 비용만 해도 빚이 늘어나고 있어요. 매월 차량 할부금, 보험료 할부금, 지입료, 차량 수리비 등 금액이 만만치 않거든요. 운행을 안 해도 지출해야 할 고정 금액이 있는거죠. 생계는 고사하고 이대로 가다간 금방 파산하고 빚더미에 앉을 판이에요. 정부 지원 대상에도 속하지 않는다 하고요. 마스크, 차량내 손소독제 비치, 차량방역 등도 지원이 없어 자비로 하고 있어요. 이번 코로나19로 정부 지원대책에도 소외된거죠. 전국 셔틀버스 노동자만 30만 명입니다. 셔틀버스 노동자도 생계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해요.

● “40대 초반의 영화 현장에서 촬영팀으로 일하는 스태프입니다”

영화 현장의 스태프들은 촬영을 위한 준비단계부터 고용되는 스태프들, 촬영단계에만 고용되는 스태프들로 구분됩니다. 영화 일이라는 것이 상시적으로 있는 일이 아니다 보니 이번 촬영이 끝나면 다음 일을 찾는 것이 중요하고, 다음 일이 언제 올지 모르니 한 번의 일자리가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대개 스태프들은 연 1.5편의 영화에 참여하고 있으며, 한편의 영화에 참여하지 못하면 1년 내내 쉬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이렇게 불안정한 일자리 상태이다 보니 최근 코로나 상황이 더욱 위태롭게 다가옵니다. 촬영 준비단계에 고용된 스태프들은 제작사로부터 코로나 상황으로 제작 연기를 통지받고 무급휴직이 당연한 듯 이야기되기도 합니다. 아직 고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촬영단계만 참여하는 스태프

들의 경우 들어갈 것으로 기대했던 영화의 촬영이 중단되거나 연기되고 있으니 휴업수당의 지급요건조차도 마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근로기준법의 적용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최근 실업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스태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18개월 중 180일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충족되어야 하는 현행 고용보험의 요건은 한 편의 영화에 3개월 내지 4개월 정도 고용되는 대부분의 스태프들에겐 어려운 요건이기도 합니다. 최근 정부가 각종의 지원책을 이야기하고 있으나 영화산업 노동자가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은 없습니다. 고용이 되어 준비 단계부터 업무를 하고 있는 스태프들은 한 편의 영화당 20명 내외입니다. 이들이 무급휴직이 아닌 휴업수당이 지원되도록 한다면 생계의 위협은 덜할 것입니다. 또한 사회안전망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다가오는 시점입니다. 사회안전망의 하나인 고용보험의 지급요건을 사회안전망으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 제도가 다양한 고용형태에 맞게 바뀌어야 합니다.

● **“한때 회사를 다녔지만 이런저런 흐름으로 퇴직하여 프리랜서로 일하게 된 개발자입니다”**

저는 계속 사상 검증이 반복되는 일러스트레이터 직군은 아니라서 그간 큰 힘듦은 없었으나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뒤로 발주처도 전부 재택근무 위주로 돌아서면서 일을 받고 진행하기에 상당한 애로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회사 사정을 이유로 일정이 꼬이는 것은 당연하고, 지난달에는 급여 지급 담당의 부재를 이유로 입금이 일주일 정도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다른 직종에 계신 분들만큼 고통스럽지는 않지만 수입이 불규칙해지니 힘들기도 하고 이 사태가 장기화되면 현재 외주 시스템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 것 같아 염려스럽기도 합니다. 그리고 프리랜서라 실질적으로 별이가 줄어도 호소할 곳이 막막하고, 정부에서 자영업자 대상으로 지원금이 나온다고는 하지만 저 같은 자택 프리랜서도 혜택의 대상이 될지 뽀족한 답도 없고 관심의 대상이 되지도 못해 답답하기만 합니다.

● **“저는 40대 후반의 연극배우입니다”**

사실 연극배우들은 계속 힘들었기에 재난 상황이라고 크게 다를 것 없다 생각했고 지나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준비중이던 공연이 하나둘 취소되더니 한 달, 두 달, 석 달... 기약 없이 취소 혹은 연기되어 가뜩이나 힘든데 몇 달 동안 수입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정부의 긴급생활자금은 일회성이고 그마저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복지 사각지대에서도 더 사각에 놓인 사람들이 긴급생활자금을 받기 위해 보이지 않는 피해를 증명해야 하고 기존 대출이 있거나 신용불량은 대출도 못 받고 있습니다. 청년층에 맞춰진 지원은 40대 이상의 예술가들에게 절망감을 주고 있고, 한국예술인복지

재단의 창작지원금 신청은 상반기 6,000명, 하반기 6,000명 예정이었으나 이미 상반기 16,000명이 지원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부에 지금까지 그렇게 요구해왔던 고용보험법 통과만 됐어도 숨통은 트였을 텐데 지금은 빚을 빚으로 메꾸는 악순환의 지원책만 있을 뿐입니다. 장기적이고 직접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예술가들의 안전한 창작과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금이라도 고용보험법 통과가 필요하고 무엇을 만들겠다, 혹은 계획을 내라, 그러면 지원금을 주겠다는 방법 외에 당장 모든 예술가가 살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 “저는 30대 후반 음악가입니다”

개인적인 음악 작업 외에 20,30,40대가 함께하는 밴드도 하고 있고, 영화음악, 음악 관련 시간제 강의 등을 병행하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WHO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팬데믹으로 선포한 즈음부터 이 모든 활동에 제약이 생겼습니다.

일단 밴드의 일정으로 4월에 잡혀있던 일본 공연이 취소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연습을 하고 멤버들 외에도 다른 악기 세션들까지 섭외해서 준비하던 공연이었습니다. 예약했던 사람들의 공연요금은 다시 돌려주게 되었고, 세션들의 페이는 물론 예약했던 항공편, 숙소 등 다양한 부분에서 적자가 생겼습니다. 당연히 계획되었던 공연수익은 제로가 되었습니다. 이 공연취소를 시작으로 상반기에 계획되어 있던 20여 건의 공연이 차례대로 취소되고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한 교육기관에서 4월부터 6월, 9월부터 11월까지 일주일에 2회씩 강의를 하기로 했던 일정이 변경되어 9월에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계획되었던 6개월의 강의를 진행되는 게 아니라 3개월로 축소되는 것입니다. 9월 강의 역시 상황에 따라 취소가 될 수 있겠지요. 영화음악 계약 건도 영화들이 거의 무기한 연기되면서 취소되었습니다. 사실 창작작업으로 벌어들이는 저작권료는 미미하기 때문에 공연과 강의, 영화음악 등으로 생활을 이어오던 저는 앞이 캄캄합니다. 그렇다고 이 시기에 공연을 새로 계획한다는 것 자체가 자타공인 위험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도 저도 못 하고 시간만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술가들은 양질의 작업을 만들어내기 위해 1년 365일 고민과 더불어 실질적인 노동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고사는 문제에서는 언제나 다른 길을 찾아야 하는 일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에서는 어떤 방향으로든 길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사회 전반에 걸친 다양한 기금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프리랜서 고용보험과 예술인권리보장법에 의거한 재난시 보편적 지원을 보장할 것을 촉구합니다.

● “학교의 방과후학교 강사들은 지금 서너달째 무급 휴업 상태입니다”

개학이 세 번씩 미뤄지더니, 이제는 언제 시작할지 모르는 기약조차 없는 상태입니다. 수업이 없으면 강사들은 수입도 전혀 없습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의 지시로 모든 방과후학교 강사들의 소득이 제로상태인데, 이런 상황을 만든 교육부와 교육청 어느 곳도 어떤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방과후학교 강사는 사실상 학교의 노동자입니다. 학교의 지시를 받고 학교가 정한 장소와 시간에 학교가 정한 수업을 하고 정해진 대로 급여를 받습니다. 이러한 방과후학교 강사들에게 실업급여나 휴업수당과 같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방과후학교 역시 공교육이고, 학교교육의 한 축입니다. 교육당국은 방과후학교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법적인 근거를 두고 이를 담당하는 강사들이 안정적으로 수업할 수 있는 안전망을 만들 것을 촉구합니다. 교육자들이 제대로 대우를 받는 학교여야 교육의 질도 높아질 것입니다.

고졸청년들의 동아리 ‘처음처럼’

코로나19로 인한 해고 사례

1. 고졸취업자 동아리 ‘처음처럼’

- 노동인권교육을 통해 만난 특성화고 졸업생들의 동아리로 출발
- 현재 60여명의 회원들로 매월 2회 공동체모임, 교육, 실천활동 등을 하는 동아리
- 올해 비영리민간단체로 전환 예정

2. 해고사례

1) 다이소 - 계약직 노동자 계약만료로 인한 해고

- 자칭 ‘국민가게’라 말하고 있는 다이소는 2018년기준 1350여개의 매장에 1만명이 넘는 노동자가 일하고 있음
- 그가 다이소의 노동환경을 둘러싼 논란은 끊임없이 이어져왔고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수당없는 연장근무, 휴일 타지점 지원근무, 정산시 차액을 직원이 지불, 직원에게 하자 제품 강매등의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청원이 잇따랐음
- 그럼에도 다이소는 2년간 계약직으로 일을 하게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았음.
- 하지만, 코로나 이후 상황은 급변하여 명동점의 경우 수십명의 직원들이 다른 매장으로 파견을 내보내고 5~6명 정도만 매장을 지키는 등 근무환경에 많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함
- 이번에 1년간 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계약연장이 되지 않고 계약만료가 된 이 노동자의 경우도 매출감소의 책임을 계약직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기 행태의 전형적인 모습
- 이 매장은 대학 부근에 위치하고 있어서 평일 800만원 주말 천만원 매출을 기록하다 코로나 이후 6,700만원으로 매출이 줄어들었고 본사에서는 셀프계산대가 곧 설치될 것이다 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
- 3월, 인정받던 직원한 분께서 연봉직재계약을 앞두고 계약종료통보. 본인은 5월에 재계약을 앞두고 있었기에 남의 일 같지 않았다고 함.
- 결국 재계약에 실패하였고 “예상했던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일 년동안 일 한것에 대한 허무함, 상황탓임에도 내가 부족해서 일 수도 있지 않을까하는 자책감, 속상함 복잡한 생각에 집 가는길 버스안에서 꽤 많이 울었습니다.”

- 이 노동자의 업무는 남아있는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전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엄청난 노동강도로 힘들어하고 있음
- 여기에 셀프계산대 설치가 시작되면서 기름에 불을 붓는 양상
- 셀프계산에 익숙치 않은 고객들의 항의와 짜증을 그렇지 않아도 인력이 줄어 노동강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감정 노동까지 해야함
- 앞으로 10년을 이 곳에서 일하고 싶어 들어왔으나 이제는 계약연장을 하면 어떻게 하나 걱정될 정도라고 함.

2) 주얼리 매장 - 저연차 노동자에 대한 권고사직

- 온오프라인 주얼리 쇼핑몰 회사에서 근무
- 사장 두 명과 팀장급 1명 대리급 3명 직원은 8명이었고 그중 3명은 웹디자이너
- 일반직원 5명은(본인 포함) 포장, 고객관리, c/s, 매장고객응대, 음료제조, MD , 마케팅, 기획 등 부서구분 없이 모든일을 해옴
- 3월 즈음 팀장의 이야기로는 “매출이 작년만큼 나오질 않으니 연차수가 가장낮은 직원 3명을 해고하자”는 이야기였습니다.
- 본인은 입사한지 이제 7개월차로 근무일수가 가장 적은 직원이었기에 긴장할 수밖에 없었고 4월 중순에 결국 연차수가 가장 높은 직원만 남기겠다고, 권고사직을 이야기 함
- 결국 대리급 1명과 본인을 포함한 일반직원 3명 권고사직 처리
- 당시에는 예상은 했지만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들으니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한 심정
- 현재 코로나 19사태로 이직 할 수 있는 직장을 구하기 어려웠고 아르바이트자리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니 당장 다음달에 내야하는 여러 비용들은 어떻게 해야할 지 걱정
- “지금 저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조금 더 강경한 대응과 방안들이 수립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3. 시사점

- 1) 경력이 적은 노동자의(청년층) 해고 가능성이 높다
 - 계약직, 신입사원 등 연차가 적은 노동자의 해고 가능성이 높고 여기에 해당하는 연령대는 당연히 청년층일 수밖에 없음

- 더구나 이들은 노조도 없고, 연령이 낮아 당당히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도 어려워 해고에 무방비일 수밖에 없음

2) 고졸청년노동자들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절실하다

- 우리나라 청년 노동정책은 대졸자들 중심
- 고졸 청년들은 사회적으로도 소외되어 있어 발언의 기회조차 제대로 주어지지 못함
-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잘 모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함

3) '해고금지법' 등 보다 강력한 노동권보호 장치가 필요하다

- 정부와 지자체에서 무급휴무자에게 일정한 지원을 해준다 하더라도 언발에 오줌누기일뿐.
- 오히려 사업주 입장에서는 코로나 시국이 인력을 줄이는 절호의 기회가 되고 있음
- 이렇게 해고해도 남아있는 사람들은 언제 그 대상이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새롭게 일자리 구하기 어려운 상황을 너무나 잘 알기에 군말없이 일할 수밖에 없음
- 그러므로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한 것이고 이를 위해서 해고금지법을 제정하여 함부로 해고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일자리피해사례_문화예술인]

포스트 코로나 시대, 문화예술에 대한 새로운 대안과 상상력의 필요성

박선영 /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팀장

1. 들어가며

○ 코로나19와 문화예술계의 위기

- 코로나19 이후 문화예술계에 불어 닥친 위기는 재앙적 수준으로, 대면활동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문화예술계의 특성만으로 현재의 상황을 이해하는데 한계

- 문화예술계가 가지고 있는 잠재적 문제점들이 한꺼번에 드러나며, 문화예술 생태계와 지원정책/행정체계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내게 됨

-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생존할 수 없는 문화예술계의 현실과 현장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정책과 행정, 문화예술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논의의 부재, 예술인의 삶보다는 행정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원구조, 소수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문화예술 협단체 구조 등

2. 문화예술계 피해사례와 규모

○ 예술인

- 코로나19로 인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예술인들의 주된 수입원이었던 공공에서 시행하는 축제나 문화행사, 전시, 공연, 상연회 등이 대부분 취소되거나 연기

- 학교문화 예술교육은 휴교가 장기화되고 등교 없는 온라인 개학으로 전환되면서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며, 문화센터, 복지회관, 도서관 등에서 진행하던 예술교육 프로그램도 대부분 취소

- 예술활동에 기반한 창작지원사업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장소 섭외, 모객들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지면서 활동 자체가 불가

○ 공연계/영화계

<2020년 1~5월 공연예술 통계현황>

	공연건수	개막편수	상연횟수	매출액(천원)
2020년 1월	708	492	7,635	38,847,222
2020년 2월	561	363	5,263	21,529,527
2020년 3월	196	83	2,202	9,122,672
2020년 4월	183	101	2,119	4,710,781
2020년 5월	350	228	3,818	11,237,287

* 출처 : 공연예술통합전산망

<2019/2020년 영화산업 통계현황>

	2019년			2020년		
	상영편수	매출액	관객수	상영편수	매출액	관객수
1월	369	151,161,478,196	18,122,443	401	143,681,067,930	16,843,696
2월	315	189,990,807,970	22,277,733	359	62,301,357,980	7,372,112
3월	373	126,559,017,449	14,671,693	343	15,152,740,950	1,834,725
4월	436	113,184,671,392	13,338,963	428	7,515,700,040	972,576
5월	455	154,563,004,957	18,062,457	403	12,395,045,000	1,526,388
6월	453	195,237,798,708	22,845,579			
7월	422	184,101,302,717	21,916,465			
8월	428	208,958,173,044	24,786,121			
9월	419	124,445,262,708	14,733,642			
10월	498	123,754,715,700	14,858,383			
11월	572	155,388,033,415	18,600,679			
12월	541	186,644,820,812	22,464,620			

*출처 : 영화통합전산망

○ 실태조사 결과

-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이 도내 예술인 534명을 대상으로 피해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66.3%가 최근 3개월 소득이 50% 이상 감소. 이 가운데 32.4%는 같은 기간 동안 소득이 전혀 없음

2. 코로나 19 관련 문화예술 지원 정책 현황

○ 직접지원

- 창작준비금과 같이 대상에 대한 직접적인 현금지원이나, 특별 용자 방식으로 지원하는 형식
- 코로나로 인한 피해, 소득 등을 기준으로 선정, 별도의 정산이나 사후 증빙

을 요구하지 않음

-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술인이 지원대상이라는 점은 한계. 영세한 창작주체일수록 집객이나 정산 시스템이 미비할 수밖에 없고, 수치상으로 드러나지 않는 피해 사실은 증명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

- 예술인 표준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는 있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계약서를 쓰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예술인들은 자신의 피해사실을 증명하기가 불가능

○ 간접지원

- 창작주체에게 대관료를 지원하거나 제작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공연장에 대한 방역물품 지원도 이에 포함

- 간접지원 방식은 예술행사들이 대부분 연기되거나 취소되는 상황에선 비효율적으로 보일수 있음. 하지만 창작활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공연장 확보나 인력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창작활동을 통한 수익금이 다음 작품을 위해 재투입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활동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

○ 소비지원

- 공연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관람료를 지원

- 메르스나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이 진정되는 경우에 필요한 지원방식으로, 사회적으로 진정되는 국면을 보이더라도 이러한 변화가 불안한 심리로 인해 곧바로 문화예술 소비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식으로 소비자들의 문화예술 소비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문화예술 소비에 대한 벽을 낮추는 방식

한국예술인복지재단	<p>코로나19 피해 공연업계 긴급생활자금 용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활동증명자 중 코로나19 기간 동안 행사, 공연 취소로 보수를 받지 못한 예술인 • 총30억 규모 • 금리 1.0% 인하(2.2%→1.2%), 지원한도 증액(5백만원→1천만원), 상환기간 유예(1년거치3년상환→2년거치3년상환) <p>예술활동증명 시 코로나19 기간 취소된 공연도 실적 인정</p> <p>창작준비금 코로나19 피해 예술인 가점부여, 우선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진·격리 등으로 활동불가, 공연·계약 축소, 취소로 피해를 입은 경우
예술경영지원센터	<p>코로나19 전담창구 운영-정부 지원 대책 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경영지원센터 설치
한국영화진흥위원회	<p>영화발전기금 유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화발전기금 부과금의 체납 가산금 면제(~'20.12.31.) <p>피해기업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유지지원금 • 국세 및 지방세 신고 납부기한 연장 • 피해기업 우대보증, 경영안정자금 등 관련 사업 확대 적용 <p>방역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진자 방문 등 피해 영화관 대상 전문 방역비용 지원 • 영세 상영관 방역용품 지원(200개 극장 5,000개 지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p>코로나19 관련 문예기금 보조사업 운영대책 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에 따른 일정변경 등 허용 • 사업 변경, 취소에 따른 정산지침 마련 • 사업 포기에 따른 불이익 미적용 <p>예술나무로 다시 봄(코로나19 모금 캠페인)</p>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p>코로나19극복, 어디서든 문화예술교육 공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교육 콘텐츠 기획 공모 • 총 200건 선정, 10건은 온라인 콘텐츠 제작 지원(2억) <p>문화예술교육 관계자 연수 아르떼 아카데미 확대</p>
국립국악원	<p>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희망-ON'프로젝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공연예술가(개인) 공연영상 및 프로필 제작, 공연 영상 공개 • 출연사례비 100만원~160만원 차등지급 • 10분내외 1작품, 총31명
문화체육관광부	<p>민간 소규모 공연장(300석미만) 방역물품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세정제(860개), 시설 소독약제(4L 430개), 소독약제 분무기(860개) <p>관광업계 긴급 금융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보증부 특별융자(1000억) • 기존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의 1년간 상환 유예(2000억) <p>문화체육관광부 직원 성금 기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체부 직원 성금 3천만원 예술인복지재단 기탁 <p>코로나19 공연예술단체 대관료 지원(예정)</p> <p>소극장 공연기획 및 제작비 지원(예정)</p> <p>예술인 및 예술단체 공연 제작비 지원(예정)</p> <p>공연 관람객 대상 관람료 지원(예정)</p>

* 출처 : [토론회] 코로나19, 문화예술 긴급지원정책을 평가하고 제안하다(2020.4.16.)

3. 무엇이 문화예술계를 위기로 몰았나?

○ 예술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부재

- 지난 2011년, 김고은 씨의 죽음을 계기로 「예술인복지법」이 제정되며,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예술인에 대한 복지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 2020년 5월 20일,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며, 특례조항으로 예술인들이 고용보험 대상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함

- 하지만, 여전히 예술인들의 노동 조건과 고용 방식은 매우 열악함. 서면계약을 의무화하였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여전히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영세한 예술단체의 경우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가 애매한 경우가 많음

- 예술인활동증명제도에 포함되지 않는 예비예술인, 예술대학생 등의 경우 사회보장의 혜택을 받는데 어려움이 존재

○ 지원사업에 의존적인 생태계 구조

- 현재 문화예술생태계는 행정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

- 코로나19 사태로 축제나 행사성 사업들이 대부분 취소되면서 문화예술계의 피해를 더 크게 만들었음. 이런 경우 취소된 사업예산을 긴급지원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필요

- 예술인의 입장에서 필요한 방식의 지원정책과 행정이 예술가들을 줄세우기 하는 방식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음

-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술인들은 지원사업에 선정되고 수행하기 위한 활동에 집중. 예술인인의 공공의존성이 높아지고, 이로 인한 피로감은 높아지는 문제 반복

○ 사회적 재난에 대한 종합적 정책 부재

- 피해예술인 구제 및 지원, 문화예술계 일자리 보장, 사회적 재난 상황에 대한 문화예술 생태계적 구조 전환 등에 대한 전략은 없이 단기적 처방 정책만 진행되고 있음

- 피해 실태에 대한 조사나 피해 규모를 산정하는 연구 등이 부재하여, 현장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이나 계획 수립이 불가능

4. 사회적 재난에 대응하는 대안적 문화예술 전략

○ 사회적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일상적 재난 대응 정책이 필요

- 사회적 재난 당시 부실한 대응의 가장 큰 원인은 재난이 일어나기 전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과 계획 수립이 없었기 때문

- 사회적 재난 상황 시 문화예술계에 대한 피해규모와 피해수준을 산출할 수 있는 연구와 함께 그에 따른 대응 계획을 단계별로 수립

- 사회적 재난에 대한 문화예술계의 대응 매뉴얼이 필요.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사회적 재난시기에는 문화예술계와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은 골든타임에 비유할 만큼 촘촘을 닦아서 진행되어야 하는 상황임에도 타 부서간의 협의나 여러 주제들 간에 논의 과정에서 아까운 시간을 흘려보낼 수밖에 없었음. 결국, 이러한 시간을 줄이고 빠르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사전에 대응 전략을 계획하고 준비

○ 사회적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문화예술 분야 컨트롤타워가 필요

-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도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 운영할 기획조정기구가 없으면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 피해 상황에 대한 파악과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빠르게 수립하고, 지속적인 상황 파악을 통해 유연한 대응을 할 필요

- 이번 사태와 같이 각 기구별로 지원정책들을 중구난방으로 수립하는 것은 효율성이나 효과성 측면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려움. 그런 점에서 사회적 재난에 대한 로드맵과 대응 프로세스에 따라 책임 있게 대응해나갈 조직 구축이 꼭 필요

○ 문화예술지원 사업에 대한 혁신

- 현재 문화예술생태계는 행정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 하지만, 코로나 사태의 경우 축제나 행사성 사업들이 대부분 취소되면서 예술인들이 생존을 위한 대안을 찾는데 빠르게 대응하기 어려움

- 지원사업에 대한 제도정비를 통해서 현장예술인과 상시적으로 소통하고 합의할수 있는 창구가 필요

- 행정중심이 아닌 예술인들의 입장에서 지원사업을 설계. 연단위 회계연도 구조를 넘어 지원의 수혜대상인 예술가들의 입장에서 다년지원이나 회계연도를 넘나들 수 있는 유연한 대처 방안도 고민할 필요

○ 예술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 필요

- 현재 자본주의 체제에서 예술인은 경제적 취약계층으로 남을 수밖에 없으나, 그에 반해 예술인에 대한 사회보장에 대한 제도는 여전히 열악함

- 고용보험 개정안을 통해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되기는 했으나, 특례조항이라는 형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고 예술인에 대한 사회적 지원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남아있음

- ‘배고픈 예술가’, ‘자유로운 영혼’과 같은 프레임을 벗어나 예술과 예술인에 대한 사회적 토론과 협의가 필요함. 이 과정에서는 예술이 가지는 사회적 기능과 가치에 대한 검토와 이에 기반한 예술생태계에 대한 재 설계가 필요함. 예술인이 우리사회의 특수 계층이 아니라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동등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필요

코로나19 정부정책 주요 내용과 평가: 사각지대 해소가 필요하다

이 철 (서울노동권익센터 정책기획국장)

1. 들어가며

- 코로나19 위기를 통해 양질의 의료(방역) 시스템과 민주적 정치체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지만, 동시에 한국사회의 불평등과 불안정한 일자리, 사회보장제도의 취약성 등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두운 면이 드러났음.
- 2월 중순 이후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 경제활동 및 경제심리가 위축 → 민생, 경제 여건 전반적으로 어려움이 확대
- (서비스업) 관광객 감소, 외출 자제 등의 영향으로 관광, 문화여가 등을 중심으로 큰 폭 위축, (소비) 음식점, 숙박업 등의 매출 감소세 지속. 온라인 매출 증가. 소비침체 장기화 가능성, (고용) 주 경제활동인구인 40대 취업자 수 감소. 3월 이후 실업자 증가 등 고용불안 심화, (취약계층) 경제 위기(재난) 시 취약계층 소득 감소와 삶의 질 하락 등 생계 위기
- 이하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고용유지지원 및 소득지원 관련 주요 정책들의 내용을 정리하고, 현행 정책들의 한계와 문제점을 취약노동계층과 사각지대 문제와 연관 지어 평가하고, 개선 방향(사각지대 해소의 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2. 정부(중앙, 지자체)의 코로나19 지원정책 개요

- 정책대상별 지원정책의 내용에 대한 요약은 발표문 말미 [참조 2] 참고.

가. 코로나19 정부 지원정책 추진 경과와 주요 내용

- 코로나19 이후 우리 정부의 정책은 2월 28일 1·2차 긴급예산편성 이후, 5차례의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와 2차례의 추경, 그리고 최근 부총리 주재의 4차례에 걸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제시되어 왔음.

<표 1> 코로나19 정부 지원정책 주요 내용

구 분	일 자	주 요 내 용
-----	-----	---------

구 분	일 자	주 요 내 용
1·2차 긴급예산편성	02.28.	- 방역대응, 가족돌봄휴가, 금융공급 확대 등 20조원
1차 추가경정예산 의결	03.17.	- 2020년 추경 국회 확정 규모는 총11.7조원
1차 비상경제회의	03.18.	- 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금융지원정책 (50조원)
2차 비상경제회의	03.24.	- 코로나19 관련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 -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100조원+@ * 1차 비상경제회의의 ‘50조원+@’ → ‘100조원+@’로 확대
3차 비상경제회의	03.30.	- 소득하위 70% 가구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7.1조원) * 04.30. 2차 추경 당시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
4차 비상경제회의	04.08.	- 내수, 수출활성화 및 벤처기업 지원 (56조원)
5차 비상경제회의	04.22.	- 일자리 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안정 대책 (기존 100조원+75조원+@) - 고용안정 특별대책 + 기업안정화 추진방안
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04.29.	- 코로나19 대응 및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 방안(I)」
2차 추가경정예산 의결	04.30	- 긴급재난지원금 12.2조원(+지방비 2.1조원) → 14.3조원(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
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05.07.	-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한국판 뉴딜 논의
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05.14.	- 공공부문 중심 고용충격 대응방안(I) 논의
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05.20.	-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방안 논의

나. 고용(일자리) 관련 주요 지원정책 내용

- 첫째, 고용유지대책으로, 고용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노동자를 해고하지 않고 고용관계를 유지하도록 유도하는 대책
- 둘째, 소득지원대책으로, 무급휴직, 해고, 또는 일거리를 찾지 못해 소득이 끊어진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지원하는 대책

1) 고용유지대책

①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 완화와 지원금 상향

- 고용된 노동자를 해고하지 않는 대신 휴업수당의 70%까지를 정부가 지원하는 고용유지 지원금의 경우 업종과 금액을 늘렸으며(최대 90%) 약 5,008억 원의 예산을 확보
- 경영악화를 증빙하는 요건 완화로 대상 확대

② 일자리안정자금 확대

- 월 215만원 이하 저임금 노동자 계속 고용하는 영세사업장에 대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을 4개월(2~5월) 근무에 한해 상향지급(4월부터 지급)

③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 (일반업종_요건완화) 일반절차는 유급휴직 3개월 후, 90일 이상 무급휴직한 경우인데, 신속지원은 유급휴직 1개월 후 30일 이상 무급휴직으로 요건이 완화
- (특별지원업종)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경우, 4.27.부터 신속지원 프로그램 시행. 일반절차와 달리 신속지원은 유급휴직 1개월 없이 즉시 지원
- (지원내용) 특별업종은 월 50만원(150만원 한도), 최대 90일까지 지원, 일반업종은 평균 임금 50% 범위 내에서 최대 180일.

2) 소득지원대책

① 가족돌봄휴가 비용 1인당 최대 50만원 지원

-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남녀고용평등법 상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한 노동자에게 1일 5만원씩 최대 10일까지 지원(최대 50만원)

②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은 실업급여 사각지대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생계지원.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무급휴직자가 대상임
- 일정 규모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 5일 이상 일자리가 끊기거나 25% 이상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노동자에게 1인당 최대 50만원씩 2개월간 지원금 지급(일부 지자체 1개월)
- 무급휴직자는 고용보험 가입자여야 하며, 특수고용노동자는 고용보험 미가입자여야 함.
- 무급휴직 노동자 11만8천명, 특고·프리랜서 14만2천명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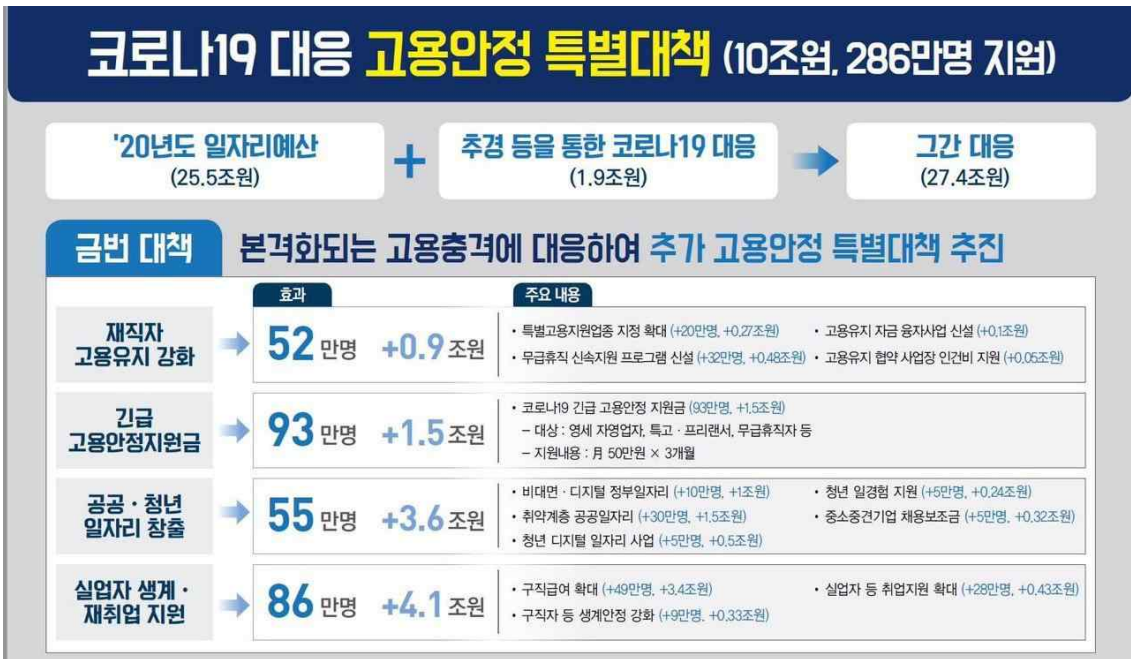
③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을 한시적으로 재도입
-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 참여자 중 기준 중위소득 60%(월 1,054,316원, 1인 가구) 이하 참여자에게 수당을 지급함
- 지급요건 완화, (현행) 타 직업으로의 전환을 상정하고 구직활동 계획수립 및 이행점검 → (개선) 종사 분야 전문성 향상, 안정적 수입 확보를 위한 제반 활동을 구직활동으로 폭넓게 인정(직업별 보수교육, 고객 확보 노력 등)
- 월 50만원씩 최대 3개월까지 수당을 지급
- 4.22. 5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구직촉진수당 지원규모 확대함. 기존 17만명에서 28만명으로 지원 대상 확대, 저소득층(7→10만), 특고·프리랜서 등 취약계층(2→5만), 청년층

(8→13만)

④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5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고용보험 사각지대의 일정소득 이하 영세자영업자, 특수고용 노동자, 무급휴직자 등 93만명을 대상으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함
- 첫 번째 달 100만원, 두 번째 달 50만원 지급. 현재 지자체별로 특고·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받지 못한 자를 우선 지원할 계획
- 특고·프리랜서는 노무를 제공해 소득이 발생한 경우라면 지원대상
- 무급휴직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된 이후인 2020년 3~5월 사이 무급 휴직한 노동자(소득구간에 따라 30일 또는 45일 이상 무급휴직).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50인 미만 기업 노동자 중심으로 지원. 항공지상조업, 일부 인력공급업 등 일부 업종은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
- 소득요건은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150% 이하. 가구소득이 아닌 신청인 본인의 연소득이 7,000만원 또는 연매출이 2억원(자영업자의 경우) 이하일 경우도 인정



다. 지방정부의 코로나19 지원 정책 개요

1) 서울시

① 서울시 고용(일자리) 관련 주요 지원 정책:

- 고용(일자리) 관련 서울시 정책은 [참조 2] 참고

② 고용유지 지원 관련 서울시 향후 정책과제 제시(서울시, 서울연구원, 5/12, 포스트코로나 시대 새로운 표준을 이끄는 서울의 정책)

-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노동자 실태조사 우선 추진하여 관리체계 구축: 고용보험 사각지대 노동자의 규모 및 소득감소 상황 파악 시급,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확인가능 방법 마련
-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 시행 전 마중물 역할, ‘서울노동계좌제’ 도입: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시행 전까지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에게 한시적으로 고용보험 혜택 제공하기 위한 시범모델로서 제안, 서울시 거주자이면서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노무제공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 역할을 보조, 고용보험과 같이 노동자와 서울시가 가입료를 부담하여 기금을 마련하고, 실업 시 생계안정자금 일부 지원
-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확대 방지 위한 고용·산재보험 직접 지원 사업: 기존의 고용노동부 및 서울시 사회보험료 관련 사업 준용

2) 전주시: “해고 없는 도시 전주”(2020.04)

<표 2> 해고 없는 도시 전주의 주요 사업내용

분 야	사 업 내 용
기업참여 분위기확산	① 해고 없는 도시 전주 상생선언
경영자금 지 원	② 고용유지 특별지원금 조성 지원
	③ 중소기업육성자금 연장 지원 (코로나19 종식 시 까지)
고용유지 지 원	④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및 컨설팅 지원 ①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 부담부분의 50% 지원(3개월 한도) ②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관련 상담, 계획서 작성 등 지원
	⑤ 고용보험 가입 지원(보험료 등 지원) 및 업종전환 등 종합 컨설팅 지원
근무인력 재배치 지원	⑥ 고용유지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⑦ 프로그램 참여기업 고용유지 훈련수당 지급
고정비용 절감지원	⑧ 지방세(주민세, 자동차세 등) 유예
	⑨ 공공요금 감면(상·하수도 요금, 도로점용료 등)

3) 지방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역	대상	금액	소요예산
경기	전 도민	1인당 10만원	1조 3,265억원
서울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당 30만~50만원	3,270억원
인천	중위소득 100% 이하, 무급휴직자 등	20만~50만원	1,220억원

지역	대상	금액	소요예산
부산	소상공인, 자영업자	1인당 100만원	1,856억원
대구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당 50~90만원	2,927억원
광주	실직자,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당 30만~100만원	1,100억원
울산	중위소득 100% 이하	1인당 10만원	330억원
대전	중위소득 50~100%	가구당 최대 70만원	1,400억원
강원	소상공인, 기초연금 수급자	1인당 40만원	1,200억원
충남	소상공인, 실직자	1인당 100만원	1,500억원
전남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당 최대 50만원	1,280억원
전북	교회, PC방 등 행정명령 대상 시설	시설당 70만원	100억원
경북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당 50~80만원	1,646억원
경남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당 30~50만원	1,656억원

3.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일자리 위기극복을 위한 다양한 고용유지 지원 및 소득지원 대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정책의 사각지대와 비용의 계층화를 낳고 있음.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불안정 고용상태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 노동자일수록 더 심각한데, 일회성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제외한 노동자에 대한 지원은 보편적으로 지원하지 않고 선별적 경향이 강함
- 특히 이번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재난은 우리 사회의 취약한 노동자를 극명히 부각시켰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의 취약성 드러남. 3월부터 코로나19의 여파가 일자리 분야에도 본격화하면서 고용보험 안전망이 확대, 가동되었지만 고용보험 가입률도 50% 이하인 수준으로 고용보험 사각지대 노동자에 대한 적극적 지원 어려움
- 우리나라 고용안전망은 고용보험이 거의 유일하며, 고용보험 대상은 지난 25년간 확대되어 현재는 1인 이상 노동자를 둔 사업장, 영세 자영업자까지 포함하고 있으나 2019.8.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는 전체 취업자의 49.4%, 실업급여 수혜자는 전체 실업자 중 45.5%인 상황(장지연, 2020.4.16.)

<고용보험 사각지대 (취업자, 가입 기준, 2019년 8월)>

(단위 : 천명, %)

취업자				
비임금 근로자	임금근로자			
	적용제외1)	미가입	공무원 등2)	가입
6,799 (24.9)	1,781 (6.5)	3,781 (13.8)	1,469 (5.4)	13,528 (49.4)
법적 사각지대		실질적 사각지대	법적 가입 제외	

- 주 1) 5인 미만 농림어업, 가사서비스업, 65세 이상, 주당 평소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으로 3개월 미만 일하고 일용직이 아닌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2)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 등 특수지역연금 가입자.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2019.8.

- 일자리가 불안정하고 실업대책에 취약한 고용위기 취약계층 728만명(파견용역 165만, 특고 220만, 5인미만 378만, 일용직 74만, 주15시간미만 93만)에 이르며 이들 중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의 수가 약 459만 명에 이르고 있음(정홍준, 2020. 4.22)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유지의 지원대상이 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지원대상 규모 작음 → 향후 늘어날 휴직자 실직자 실직자 규모를 커버할 수 있을지 의문) 취약노동자에 대한 지원금액 또한 기본적인 생계유지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기 때문에, 불안정 노동자 중에 정책의 사각지대가 많고, 고용보험에서 배제된 사람들에게 대한 공적 소득보장제도는 공공부조를 제외하면 미흡한 실정임.
- 일자리안정자금도 고용유지지원금도 고용보험 가입자와 조건을 내걸고 있기 때문에, 특고, 비정규직, 불안정고용,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등 배제 가능성 높음.
- 취업자 감소, 일시휴직자의 60%가 도소매, 숙박업, 보건복지 부문의 50대이상 여성 계층(취업자감소 -11만, 일시휴직자 81만) → 청년, 일반노인 대상 대책은 있으나 이들 중 장년 여성에 대한 대책 불분명

4. 맺으며: 사각지대 해소가 필요하다!

-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이 업무량 감소 및 소득 감소를 경험하고 있고, 연령이 높을수록, 임시일용직, 간접고용, 소규모 기업, 서비스/판매.단순노무직일수록 소득감소 경험은 고용정책과 사회보장정책이 취약계층 노동자를 중심에 두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음
- 그러나, 사회안전망은 정규직/재직자 중심으로 구성. 우리사회에서 소득과 고용에서 불안정한 사람들이 실업의 위험에서도 거의 무방비 상태. 노동시장에서 어렵게 사는 저소득 불안정 취업자들이 사회안전망에서도 배제
-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대한 보완으로 전국민고용보험에 대한 사회적 컨센서스가 자연스

럽게 형성됨. 그 내용도 자영업자, 특고 종사자 등 취약층을 포괄하는 것과 소득기반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공감대가 형성됨

- 정부의 각종 지원정책은 이번 코로나 팬데믹에 적용되는 일시적인 것이어서 향후 주기적으로 반복될 전염병과 코로나19의 피해 영향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지원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은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노출될 것임. 따라서 향후 보다 쉽고 신속하게 이러한 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정기적인 정책들이 마련되어야 함.

※ 이하 [참조1] 지원정책 관련 주요 연락처와 [참조2] 정책대상별 지원정책 요약은 박정우, 2020, “서울시민을 위한 코로나19 대응정책 3차 안내서” 서울노동권익센터(2020.06.01.)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각종 지원정책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 안내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1] 지원정책 관련 주요 연락처

1) 중앙정부 및 유관 기관

해당 정책	기관	연락처 및 홈페이지
중앙정부 긴급재난지원금	행정안전부 상담센터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	☎ 2100-3399 긴급복지지원금.kr
실업급여 / 워라밸지원금 / 가족돌봄휴가 지원 제도 / 구직촉진수당 / 특고·프리랜서 구직촉진수당 / 고용유지지원금 / 일자리 안정자금 /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전담 콜센터 전담 홈페이지	☎ 1899-4162 covid19.ei.go.kr
코로나 생활비 지원금 / 유급휴가지원비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사회보험료 경감 및 유예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 콜센터	☎ 1577-1000 ☎ 1355
임금감소생계비 용자 / 소액생계비 용자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welfare.kcomwel.or.kr
건설노동자 생활비 용자	건설근로자공제회	☎ 1666-1122
유급휴가지원비	국민연금지사	☎ 1355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진흥공단	☎ 042-363-7130
초저금리 대출	기업은행	☎ 1588-2588
신속·전액보증 프로그램	신용보증기금	☎ 1588-6565
	기술보증기금	☎ 1544-1120
	지역신용보증재단	☎ 1588-7365

2) 지방정부 및 유관 기관

해당 정책	기관	연락처 및 홈페이지
서울형 재난긴급생활비 /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 서울형 특고·프리랜서 특별지원금 / 서울형 자영업자 생존자금	다산콜센터	☎ 120
서울형 재난긴급생활비	서울복지포털	wis.seoul.go.kr
서울형 고용유지지원금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 2133-5343
코로나 확진자 방문 피해기업 지원	서울시 경제정책과	☎ 2133-5247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	☎ 2133-5158
전통시장 임대료 인하 혜택 제도	서울시 소상공인정책담당관	☎ 2133-5542
서울시 재산 및 출연기관 입주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서울시 재산관리부서	☎ 2240-8750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	서울노동권익센터	☎ 02-376-0001
	도심권 서울특별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 02-6959-5255
	동남권 서울특별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 02-408-5255
	강동구 노동권익센터	☎ 02-3425-8715, 8717
	강서구 노동복지센터	☎ 070-4226-8863
	구로구 근로자복지센터	☎ 02-852-7341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 02-886-7900
	광진구 노동복지센터	☎ 02-458-5055
	노원노동복지센터	☎ 02-3392-4905
	서대문구 근로자복지센터	☎ 02-395-0025
	성동근로자복지센터	☎ 02-469-8573
	성북구 노동권익센터	☎ 02-909-3987, 3988
	양천구 노동복지센터	☎ 02-2645-0858
	중랑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 02-496-8477
	마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 02-306-2226
	은평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 02-6952-1871
	서울형 노동자 심리상담프로그램	서울시감정노동종사자권리보호센터
서울형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	☎ 1666-9988
코로나 피해기업 긴급자금 지원 / 서울형 공목상권 긴급자금 지원 / 서울형 저금리 전환형 대환대출 지원	서울신용보증재단	☎ 1577-6119

3) 자치구 및 동사무소

해당 정책	기관		연락처 및 홈페이지
서울형 고용유지지원금	종로	종로구 일자리플러스센터	☎ 2148-3957, 3960
	중구	중구청 합동상황실(지하1층)	☎ 3396-8131~4
	용산	용산구 일자리플러스센터	☎ 2199-8239
	성동	성동구 일자리정책과	☎ 2286-6386, 7800
	광진	광진형 소상공인지원센터	☎ 450-7020
	동대문	동대문구 일자리센터	☎ 2127-4920~1, 3
	중랑	중랑구청1층 민원여권과 내	☎ 2094-2248~50
	성북	성북구 일자리플러스센터	☎ 2241-3947~9
	강북	강북구 희망일자리 플랫폼	☎ 945-7933
	도봉	도봉구 일자리경제과	☎ 2091-2862, 2865
	노원	노원구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	☎ 2116-3486
	은평	은평구 일자리센터	☎ 351-6260~5
	서대문	서대문구 일자리센터	☎ 330-1417
	마포	마포구 일자리지원과	☎ 3153-9956~7, 9959~60
	양천	양천구 일자리플러스센터	☎ 2620-4633, 4639
	강서	강서구 일자리정책과	☎ 2600-1201~1204
	구로	구로구 일자리플러스센터	☎ 860-2157
	금천	금천구 일자리센터	☎ 2627-2073~4, 2078
	영등포	영등포구 일자리플러스센터	☎ 2670-1667
	동작	동작구 경제진흥과	☎ 820-9732
관악	관악구 용꿈꾸는 일자리카페	☎ 879-5044	
서초	서초구 일자리플러스센터	☎ 2155-8766, 8768	
강남	강남구 일자리지원센터	☎ 3423-6748~9	
송파	송파일자리통합지원센터	☎ 2147-4926	
강동	고용유지지원금 전담센터	☎ 3425-8841~4	
긴급재난지원금 / 서울형 재 난긴급생활비 / 서울형 긴급 복지지원 / 추가 쿠폰(기초생 활, 아동수당, 노인일자리)	동주민 센터	https://univ.jinhakapply.com/ApplyV8/Wonseo/Yui/Yui924401_contact.html	

[참조2] 정책대상별 지원정책 요약

1) 서울지역 일반 시민 대상

전국민 누구나 중앙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중위소득100%이하 시민이라면 서울형 재난긴급생활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주체) 중앙정부 · (대상)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 · (지원)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100만원 카드포인트 또는 지역상품권·선불카드 중 선택 · (신청) 5월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또는 18일 동사무소 오프라인 신청 세대주가 요일에 맞게 신청 · (조회)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세대주 여부와 금액 조회 · (문의) 행정안전부 콜센터(2100-3399),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 주소지 동주민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주체) 서울시 · (대상)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387만원) 미만. 가구 원수에 따라 소득기준 변동 · (내용) 가구원 수에 따라 30~50만원 지급 · 중앙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중복 수령 가능 · (문의·신청) 다산콜센터(120), 동주민센터, 서울복지포털(wis.seoul.go.kr)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하다면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주체) 서울시 · (대상) 생계곤란의 위기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하나, 중앙정부의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배제된 사람 · (조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85%(329만원) 이하와 재산 고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주체) 중앙정부 · (대상) 생계곤란의 위기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 · (조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75%(290만원) 이하와 재산 고려. 가구원수에 따라 소득기준 변동

가구원수에 따라 소득기준 변동 · (지원) 가구당 30만 원(1인)~최대 100만원(4인) · (문의) 거주지 동주민센터, 구청,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	--

기초생활 및 차상위수급자라면 저소득층 소비쿠폰지원	아동수당을 받고있다면 특별돌봄 소비쿠폰지원	노인 일자리 참여자라면 노인일자리 소비쿠폰지원
· (지원주체) 중앙정부 · (지원) 4인기준 108~140만원 추가 소비쿠폰 지급 · (문의) 주소지 동사무소	· (지원주체) 중앙정부 · (지원) 아동 1인당 40만원 추가 소비쿠폰 지급 · (문의) 주소지 동사무소	· (지원주체) 중앙정부 · (지원) 4개월 간 월5.9만원 추가 소비쿠폰 지급 · (문의) 주소지 동사무소

2) 서울지역 노동자 대상

유급휴직·휴업을 하고 있다면	5일 이상 무급휴직을 하고 있다면	30일 이상 무급휴급휴직을 하고 있다면
휴업수당	서울형 고용유지지원금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주체) 사업주 · (대상) 회사의 사유로, 휴직·휴업을 하는 노동자 · (지원) 평균임금의 70% · 5인이상 사업장은 의무이고, 5인미만 사업장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 시 지급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주체) 서울시 · (지원조건) 서울지역 50인미만 사업체 고용보험 가입자 · (지원) 월 50만원, 2개월 간. 최대 100만원. 최대 49명까지 지원 · (신청주체) 사업주 또는 무급휴직자 모두 상시적으로 신청 가능 · (문의) 서울시 일자리정책과(2133-5343), 사업체주소 내 자치구별 “고용유지지원금” 담당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주체) 중앙정부 · (지원조건)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50인미만 사업체 ② 가구중위소득 150% 이하 또는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지원) 월 50만원 3개월 간. 최대 150만원. 지원금 신청시 고용서비스 제공 · (신청주체) 무급휴직자 직접 신청 · (문의신청) 6/1~7/20일 전담 콜센터 (1899-4162) 홈페이지(covid19.ei.go.kr), 오프라인 7/1~7/20 접수처(추후 공지)
사회보험료가 부담되는 노동자라면	원치않게 해고당했다면	취업을 위해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면
사회보험료 경감 및 유예	실업급여	구직촉진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주체) 중앙정부 · (대상)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경감 및 유예. 자세한 내용은 본문 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주체) 근로복지공단 · (대상) 원치않은 사유로 해고 · (지원) 일 최대 66,000원 · (문의) 고용노동상담센터(13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주체) 중앙정부 · (대상) 취업성공패키지 참여하는 저소득층 (중위소득 60% 이하) 구직자 · (지원) 매월 50만원, 최대 3개월 · (문의) 고용복지상담센터(1350)

직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코로나로 인해 스트레스와 불안이 크다면	
서울형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	서울형 노동자 심리상담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주체) 서울시 · (대상) 노사관계 및 직장에서 문제를 겪고 있는 서울의 모든 노동자와 사업주 · (지원) 노동권 침해에 관한 상담 및 구제 · (문의) 서울노동권익센터 (02-376-00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주체) 서울시 · (대상) 코로나19로 심리적 불안을 겪고 있는 모든 노동자·소상공인 · (문의) 서울시 감정노동센터(722-2525) 	
코로나로 입원·격리되어, 무급휴가 써야한다면	코로나로 인해 가족돌봄을 해야한다면	
코로나 생활비 지원	근무시간을 단축한다면 워라밸 지원금	무급휴가를 간다면 가족돌봄휴가 지원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주체) 중앙정부 · (대상) 유급휴가비용 지원받지 못한 자 · (내용) 4인가구 최대 123만원 · (문의) 주민등록 주소지 동사무소/보건복지상담센터(1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주체) 중앙정부 · (대상) 코로나로 인한 가족돌봄으로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한 근로자에게 이를 허용한 사업주 · (지원) 기업규모와 단축 시간에 따라 차등. 임금감소보전금(최대 60만원), 간접노무비(40만원), 대체인력지원금(최대 80만원) · (문의) 고용복지상담센터(13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주체) 중앙정부 · (대상) 코로나로 인한 가족돌봄으로 무급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 (지원) 부모 각각 1인당 10일 간 1일 5만원 (최대 100만 원) · (문의) 고용복지상담센터(1350)

생활안정자금 용자가 필요하다면		
임금이 감소한 경우 임금감소생계비	생활비가 부족한 경우 소액생계비	건설노동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주체) 중앙정부 · (대상) 소속사업장 6개월 이상 근속 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정규직) 월 388만원 이하 ② (비정규) 소득요건 미적용 · (융자한도) 1,000만 원 내 임금감소액 · (이자율) 1.5% · (문의) 인터넷신청 (welfare.k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주체) 중앙정부 · (대상) 소속사업장 3개월 이상 근속 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정규직) 월 388만원 이하 ② (비정규) 소득요건 미적용 · (융자한도) 200만원 이내 · (이자율) 1.5% · (문의) 인터넷신청(welfare.kcomwel.or.kr) 또는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주체) 건설근로자공제회 · (조건) 퇴직공제부금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적립원금이 100만원 이상 · (지원) 최대 200만원까지 무이자 대부 · (문의) 건설근로자공제회(1666-1122)

3) 서울지역 특수형태고용종사자·프리랜서

일감이 없는 저소득층 특고·프리랜서라면	소득이 25% 이상 감소했다면	사회보험료가 부담이 되는 특고들을 위해
서울형 특고·프리랜서 특별지원금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회보험료 경감 및 유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주체) 서울시 · (대상) 서울시민 중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건강보험료 기준)의 특고·프리랜서 노동자(4인기준 건보료 대략 16만 3천원 이하) · (조건) 고용보험 미가입, 20일 이상 무노동 또는 30% 이상 소득 감소 · (지원) 50만원 현금 · (문의) 다산콜센터(120), 서울시 홈페이지 (www.seoul.go.kr), 출생연도별 이메일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주체) 중앙정부 · (지원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가구중위소득 150% 이하 또는 연소득 7천만원 이하 ② 소득 25% 이상 감소 · (지원) 월 50만원 3개월 간. 최대 150만원. 지원금 신청시 고용서비스 제공 · (신청주체) 특고·프리랜서 직접 신청 · (문의·신청) 6/1~7/20일 전담 콜센터 (1899-4162) 홈페이지(covid19.ei.go.kr), 오프라인 7/1~7/20 접수처(추후 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주체) 중앙정부 · (대상)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료 경감 및 유예. 자세한 내용은 본문 참조
생활안정지원 용자가 필요하다면	구직 및 훈련을 한다면	
임금감소생계비와 소액생계비 용자	특고·프리랜서 구직촉진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주체) 중앙정부 ·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임금감소) 소속사업장 6개월 이상 근속 ② (소액생계) 소속사업장 3개월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주체) 중앙정부 · (대상)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에 진입한 중위소득 60% 이하인 2020년 신규 참여자 · (지원) 매월 50만원×3개월 (최대 	

<p>근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자한도) 200만 원 내 · (이자율) 1.5% · (문의) 인터넷신청(welfare.k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p>150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의) 고용복지상담센터(1350)
---	---

4) 서울지역 중소기업주 대상

직원에게 유급휴직을 한다면	고용유지가 힘든 30인 미만 사업주를 위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10인 이상 사업주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일자리 안정자금 확대 지원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급주체) 중앙정부 · (지원) 직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의 최대 9/10(최대 6만 6천원) · (문의) 고용노동상담센터(13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주체) 중앙정부 · (대상) 20년에 신규신청을 통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결정된 30인 미만 사업주 · (지원기간) 3월부터 4개월 간 한시적 · (지원내용) 기존금액에 더하여, 10인 미만은 최대 7만원, 10인 이상은 최대 4만원 추가 · (문의) 고용노동상담센터(13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주체) 중앙정부 · (대상) 고용조정이 불가피하여, 근로자들의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한 사업주 · (지원조건) 영업의 어려움, 휴업·휴직 기간, 피보험자 수, 고용유지조치 사전실시 여부, 노사합의 여부, 특별고용지원업종 여부 등이 고려됨. ·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특별업종) 월 50만원(150만원 한도), 최대 90일 ② (일반업종) 평균임금 50% 범위 내, 최대 180일 · (문의) 고용복지상담센터(☎1350)
연매출 2억 미만의 영세사업주라면	매출이 25% 이상 감소한 영세사업주라면	50인 미만의 도심제조업 소규모사업주라면
서울형 자영업자 생존자금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서울시 소규모제조업 긴급사업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주체) 서울시 · (대상) 서울에 사업자 등록한 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주체) 중앙정부 · (지원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주체) 서울시 · (대상) 서울 소재 제조업체(의류 및 신발

<p>중 19년 연매출 2억 미만인 소상공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현금 140만원 (6월과 7월 각각 70만원씩) · (문의) 다산콜센터(120). 5월 중순 이후 온라인 접수 시작하고, 6월부터 오프라인 접수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연소득 7천만원(연매출2억원) 이하 ② 소득·매출 25% 이상 감소 · (지원) 월 50만원 3개월 간. 최대 150만원. 지원금 신청시 고용서비스 제공 · (신청주체) 사업주 직접 신청 · (문의·신청) 6/1~7/20일 전담 콜센터 (1899-4162) 홈페이지(covid19.ei.go.kr), 오프라인 7/1~7/20 접수처(추후 공지) 	<p>제조업,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중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조건) 3개월 간 고용유지 조건 · (지원) 신규 상품 기획·개발 및 마케팅, 물류비 등 사업비 최대 3,000만원 지원 · (문의) 서울시 거점성장추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봉제) 02-2133-9530~3 - (수제화) 02-2133-9534 - (인쇄) 02-2133-9535 - (기계·금속) 02-2133-9536
<p>코로나로 입원·격리된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준다면</p>	<p>직원이 가족돌봄을 위해 근무시간을 줄여야 한다면</p>	<p>사업장에 코로나 확진자가 방문했다면</p>
<p>유급휴가지원비</p>	<p>위라벨 지원금</p>	<p>코로나 확진자 방문 피해기업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주체) 중앙정부 · (대상) 코로나로 입원·격리된 직원에게 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 (지원) 최대13만원×유급휴가 기간 · (문의) 국민연금지사 소재지 (1355)/보건복지상담센터(1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주체) 중앙정부 · (대상) 코로나로 인한 가족돌봄으로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한 근로자에게 이를 허용한 사업주 · (지원) 기업규모와 단축 시간에 따라 차등. 임금감소보전금(최대60만원), 간접노무비(40만원), 대체인력 지원금(최대8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급주체) 서울시 · (지원대상) 코로나 확진자 방문으로 휴업한 5인 미만 소상공인 및 가맹점 사업자 · (지원내용) 휴업기간 5일 간 발생한 임대료 및 인건비 지원. 최대 195만원 · (신청기간) 2020.04~위기경보 심각단계 해체

	· (문의) 고용복지상담센터(1350)	· (문의) 서울시 경제정책과 (2133-5247), 25개 구청 지역경제과
사회보험료가 부담이 되는 사업주들을 위해	임대료가 부담되는 중소기업주를 위해 (1)	
사회보험료 경감 및 유예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춘다면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 (지원주체) 중앙정부 · (대상)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료 경감 및 유예. 자세한 내용은 본문 참조	· (주체) 중앙정부 · (지원대상) 상가건물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사업자 · (지원내용) 20년 상반기 임대료 인하 시, 인하액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 · (신청) 소득세·법인세 신고시 세액공제 신청	· (주체) 서울시 · (지원대상) 환산보증금(월세*100+보증금) 9억원 이하 점포 임대료 인하한 임대인 · (지원내용) 건물보수비용, 전기안전점검, 방역, 착한 임대인 건물 홍보 · (신청기간) 20.04 이후 · (문의)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2133-5158), 각 구청 일자리경제과
임대료가 부담되는 중소기업주를 위해 (2)		
전통시장 임대료 인하 혜택 제도	공유재산 내 임차한 소상공인 이라면	
	국유재산 및 공공기관 입주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서울시 재산 및 출연기관 입주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 (주체) 서울시 · (지원대상) 20.02~07월 사이 임대료 인하 합의한 전통시장 · (지원내용) 2021년 시설현대화사업 우선 선정	· (주체) 중앙정부 · (지원대상) 5인 미만 소상공인. 건설업·운수업·제조업(광업)은 10인 미만 · (지원) 정부소유임대는 재산가액의	· (주체) 서울시 · (지원대상) 서울시 공유재산 및 투자출연기관 내 소상공인 임차인(평균매출액 50억 이하, 음식점업 10억 이하) · (지원) 임대료 6개월 간 50%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방법) 2021년 사업 공모시, 자치구 경유하여 신청 · (신청기간) 2020.03말~4월 · (문의) 서울시 소상공인정책담당관 (2133-5542) 	<p>3%→1%로 인하. 공공기관임대는 협의에 따라 20~35% 인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기간) 20.03월~07월 · (문의) 서울시청 재산관리부서 (2240-8750)
<p>장래의 위기에 대응하고 싶다면</p>	<p>기업자금이 어려워졌다면 (1)</p>	
<p>서울형 노란우산 희망장려금</p>	<p>10일 이내의 신속한 자금이 필요하다면</p> <p>코로나 피해기업 긴급자금 지원</p>	<p>연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라면</p> <p>신속·전액보증 프로그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주체) 서울시 · (노란우산) 위기가 발생한 소상공인에게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공제상품 · (대상) 연매출 2억원 이하 사업주 · (지원) 납부금액 중 월 2만원 1년 지원 · (문의)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 콜센터 (1666-998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체) 서울시 · (대상) 아래 두 가지 경우의 소상공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확진피해기업) 확진자 방문 또는 대표자 또는 종업원 등이 격리로 영업일의 반일 이상 중단한 소상공인 ② (직간접피해기업) 서울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지원) 장기저리융자 및 보증우대 · (방법) 아래 세 가지 중 하나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신용재단 상담 후 지점 방문 ② 신용재단 홈페이지 신청 후 전화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체) 중앙정부 · (대상) 연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 · (지원) 업체당 5,000만원 이내 · (우대사항) 100% 보증비율 및 간이심사절차 적용하여 신속 · (신청 및 문의) 아래 중 하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신용보증기금(1588-6565) ② 기술보증기금(1544-1120) ③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

	③ 시중은행 방문(재단 홈페이지 참조) · (문의) 서울신용보증재단 (1577-6119)	
기업자금이 어려워졌다면 (2)		
연매출 2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라면	4등급 이하 중·저신용 소상공인이라면	15%이상 고금리로 부담이 크다면
서울형 골목상권 긴급자금 지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서울형 저금리 전환형 대환대출 지원
· (주체) 서울시 · (대상) 아래 세 가지 조건의 소상공인 ① 직전연도 연매출 2억원 이하 ② 서울에서 업력 6개월 이상 ③ 신용등급 1~7등급 · (지원) 업체당 2,000만원 이내. 변동금리 1.5%,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 (방법) 유선상담예약 후 지점 방문 · (문의) 서울신용보증재단 (1577-6119)	· (주체) 중앙정부 · (지원) 개인신용등급 4~10등급의 소상공인 · (융자내용) 금리 1.5%, 한도 1,000만원 · (문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363-7130), 전국 62개 지역센터	· (주체) 서울시 · (대상) 3개월 이상 15% 이상의 고금리 채무 상환중인 소상공인 · (지원) 15%이상→2.3%로 전환.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업체당 3,000만원 이내 · (방법) 유선상담예약 후 지점 방문 · (문의) 서울신용보증재단 (1577-6119)
기업자금이 어려워졌다면 (3)		
1~6등급의 초저금리 대출 최초 신청	1~3등급 고신용 소상공인이라면	

사업주라면	
초저금리 대출	시중은행 이차보전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체) 중앙정부 · (지원대상) 아래 대상 중 둘 중 하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1~6등급의 고·중신용의 초저금리 최초 신청 소상공인 ② 1~3등급의 고신용의 소진공 자금 신청 후 아직 미지급된 소상공인 · (융자내용) 1.5% 금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음식 숙박업 등 가계형 소상공인 3천만원 한도 ② 도매 제조 등 기업형 소상공인 1억원 한도 · (문의)기업은행 콜센터 (1588-258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체) 중앙정부 · (지원) 기업신용 1~3등급의 연매출 5억원 이하 소상공인 · (융자내용) 금리1.5%(최대 1년), 3천만원 한도 · (신청기간) 20.12.31일까지만 신청 가능 · (문의) 이차보전 프로그램 취급 14개 시중은행

재난시기에 필요한 민관협력과 지방정부의 정책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문종찬

- 사각지대에 대한 지속적인 현황 파악을 위해서 공공일자리로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자
- 무엇을 조사할지, 조사결과를 어떻게 해석할지, 어떤 대책을 수립할지 의논할 수 있는 노동자·시민참여 거버넌스(예-일자리안정 민관협의체)와 노동자참여플랫폼을 구축하자
- 「당사자 주체+조직+공공부조」를 실현할 모델로 '노동공제회' 설립기반을 조성하자
- 코로나19 이전과는 다른 '노동권이 보편적으로 보장되는 사회'를 준비하자

1.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현황 조사

가. 필요성

- 고용보험 가입자 전체 취업자의 절반에 불과
2019년 8월 현재 고용보험 가입자는 취업자의 49.4%지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가지는 근속 7개월 이상의 고용보험 가입자는 41.6%다. 특수직역연금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공무원·교원 등을 합하더라도 실업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취업자의 47.0%에 그친다.(이병희,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 일자리피해사례 발표에서 보듯이 다양한 사례가 존재하면 위기의 폭과 깊이도 제각각임.

나.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현황 조사를 담당할 모니터링단을 공공일자리로 구성

- 일시적인 대규모 조사도 필요하지만, 다양한 사례와 추이를 파악할 정기조사도 꼭 필요함.
- 안정적인 현황 조사를 위해서 '공공일자리'로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가동
- 각종 긴급지원금에 대한 현장상담·지원 업무 병행
- 코로나19 이후에도 노동법률상담과는 다른 영역의 '노동복지상담' 1) 사업 등으로 전환

1) 서울시 노동복지상담시범사업 계획(안)(2017, 서울노동권익센터)

·유지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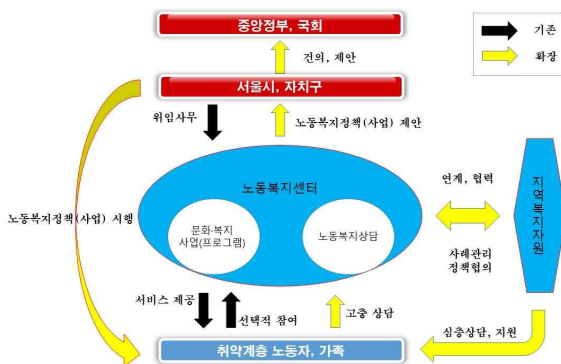
2. 일자리안정 민관협의체와 노동자참여플랫폼

- 재난시기 정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함. 특히 지방정부의 방역, 생활지원 대책은 노동자 시민의 일상과 매우 밀접하고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됨. 따라서 정부주도성이 매우 강화되는 시기임.
- 촘촘하고 실효성 있는 생활고용안정지원과 코로나19 이후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노동자 시민 주체형성과 민관협치가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임.
- 지자체 별로 예컨대 - ‘일자리안정 민관협의체’ 를 구성하고 △현황조사대책 △생활고용안정지원대책 △제도개선대책 △뉴딜일자리대책을 다룰 수 있어야 함.
- 일자리안정 민관협의체는 기존 협의체 등의 역할과 의제를 조정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당사자 참여의 확대임.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현장 노동자의 집합적 목소리를 조직을 지원하는 것도 정부의 책무임.
- 노동자참여플랫폼 구축은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상황에서 오히려 그 빛을 받을 것으로 기대함.

※ 비영리노동시민사회단체의 전업활동가 긴급지원도 반드시 필요함. 낮은 급여에도 불구하고 헌신적인 활동으로 노동시민역량 강화에 복무해 왔지만, 정작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피해 긴급지원에는 빠져 있어서 활동 안정화를 위한 긴급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3. 노동공제회 설립기반 조성

- 전국민고용보험제도가 논의되고 있음. 많은 쟁점이 있겠으나, 현행 제도에서도 실업급여의 소득대체율, 수급기간이 충분하지 않았음.
- 공공부조로 보완할 수 있겠으나, 정부가 아닌 민간이 주도할 수 있도록 설계함으로써 뉴노멀을 만들어 가야할 것으로 생각함.(참고 : 서울형노동계좌제2)



2)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 시행 전 마중물 역할, ‘서울노동계좌제’ 도입

○ 노동공제회 설립 기반 조성

공제는 사고나 질병 등 어려운 일을 당하여 발생하는 경제적인 부담을 개인의 책임으로만 맡기지 않고 회원들 상호간의 서로 돕기 정신으로 부담을 나누기 위해 미리 일정한 금액의 돈을 적립하여 위험에 대비하는 것을 말한다. 서구에서 우애조합과 상호보험은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공제부금을 납부하고 필요할 때 급부를 받는 조직으로서 사회적 네트워크의 원형이라 할 수 있다.(2019, 봉제인공제회교재)

- 당사자 본인의 기여를 전제로 하는 노동공제회에 노동이력 증빙을 보완하고 정부의 공적기금을 매칭한다면 위험에 대비하는 공공부조를 민간이=당사자가 운영하는 모델로 설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4. 코로나19 이후의 노동권

- ‘노동=노사문제’ 라는 틀에 얽매어서는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노동권’ 은 요원함.
- 보편적 노동권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권리 △노동민주주의로 생각 할 수 있으며, 이는 누구나 향유하여야 하는 권리임.
- 오늘 이 집담회를 계기로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재난상황을 극복하는 사각지대 제로운동과 향후 사회적 변화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테이블(코로나시민대책위 분과특위 형식)이 구성되기를 바랍.

-
- 서울시 거주자이면서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노무제공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 역할을 보조
 - 고용보험과 같이 노동자와 서울시가 가입료를 부담하여 기금을 마련하고, 실업 시 생계안정자금 일부 지원
 - 고용보험에서 사업주와 노동자가 각각 부담하는 방식을 차용, 종속성이 분명하지 않은 노동자이므로 사업주의 부과 책임을 서울시가 대신함(이하 생략, 2020.5. 서울연구원)

사각지대 노동자 고용생계소득 위기 극복을 위한

민주노총의 대응 현황 및 계획

2020.6.3. 민주노총 정책국장 이광규

1. 대응 경과

- 코로나19 위기의 심화 과정에서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은 항공, 관광, 대면서비스업종 등 위주의 노동권·(고용)안전망 사각지대 노동자
- 지역고용대응 특별 지원금 대응
-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대응
 -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총연맹 담당자회의(정책, 조직, 전략조직)
 - 특고, 작은사업장, 돌봄, 도심제조업 등

2. 노동권·안전망 사각지대 노동자들의 고용생계소득보장 요구

- 1)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민주노총 요구 개요 : 별첨자료 1 참조
- 2) 고용안정지원금 개선 요구안 개요 및 관련 민주노총-고용노동부 실무협의(0527) 결과 : 별첨자료 2., 3 참조
- 3) 코로나19 대응 고용정책 개선 요구안(민주노총-고용노동부 4차 실무협의 사전 제출용 자료) : 별첨자료 4 참조

3. 이후 대응 방향 관련 주요 논의 내용

- 1)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대응 총연맹 담당자회의(3차) 관련 내용 논의 결과

안전4.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대응 사업의 발전 방향 논의

- 고용안정지원금에 국한된 대응은 의미가 제한된다는 점에 대한 공감
- 특수고용노동자와 작은 사업장 노동자를 재난 시기 생존권과 전국민고용보험제, 전태일법 등 장기적,제도적,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한 조직적 투쟁의 주체로 세우는 관점에서 교섭과 투쟁의 결합, 기존 의제투쟁과 코로나19 의제의 분리 극복 등의 관점에서 역할과 대응내용을 확대해나

갈 필요성에 대한 공감

- 총연맹 코로나19 대응 주체가 정책과제와 대응방향 중심으로 논의판을 짜서 참여를 조직화 해나가고 이후 해당 단위 중심의 실천방안을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대응방안논의를 구체화해나 갈 수 있겠다는데 대한 공감

- (결론) 위 내용에 대하여 해당 단위와 소통 및 세부계획 구체화 후 차기 회의에서 본격 논의 하여 정리함

2) 재난 기간 모든 해고금지 생계소득 보장 요구안 제출 후속 사업계획(0528)

- 제5차 민주노총 가맹산하조직 정책담당자회의의 제출

1.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노동자들의 코로나19 고용생계소득 위기 공동 대응

1) 코로나19 고용안정금 지원금 관련 노동부 실무 협의(5/27일)

2) 코로나19 시민 대책위, 한비내 주최 증언&집담회(6/3) 참석

3) 돌봄노동자 코로나19 고용생계소득 위기 대응 별도 논의

4)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노동자들의 해고금지, 고용생계소득 보장을 위한 고용유지지원제도 개선 및 근로감독대책 관련 논의

5)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노동자들의 코로나19 공동 대응 방향 모색 워크숍

6) 워크숍 결과에 기초한 후속 대응

2. 산업정책과 포스트 코로나19 사회 건설을 위한 경제산업노동체제의 재구성 방향 논의

- 이하 세부 내용 생략

3. 해고 없는 위기 극복과 노동 주도의 포스트 코로나19 실현을 위한 산별노조-지역본부의 역할 연속 논의

4.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과 확대재정정책, 세제개편, 재벌 책임 강화, 고용기금 조성 세부 요구안 논의

4. 사각지대 제로운동의 발전 방향 관련 주요 논의 과제(발제자의 개인적 의견)

1) 사각지대 제로 실현 방안 : 정책 대안 및 요구방향

(1) 당면 긴급 요구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대상 확대 및 지원 요건, 지원 방식 개선

○ 고용유지지원제도의 보완 및 개선

○ 중앙정부의 역할과 지방정부의 역할의 결합

(2) 근본적 해결 방안

○ 사각지대노동자들을 위한 고용안전망, 사회안전망의 실질적 확립, 강화

- 전국민고용보험시대 담론이 어떻게 사각지대노동자들 자신의 것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고용안전망 이외의 사회안전망은 어떻게 확립 강화해 나갈 것인가?

○ 안전망 확립 차원을 넘어 사각지대 일자리를 노동권이 보장되는 좋은 일자리화로 근본적 개선

- 중앙정부 전체 및 해당 부처의 정책 개선을 통한 노동권이 보장되는 좋은 일자리로 개편 방안
- 지방정부의 산업노동정책 개선을 통한 노동권이 보장되는 좋은 일자리로 개편 방안
- 업종별 노정, 노사, 노사정 협의를 통한 개선 방안
- 협약임금정책 개선을 통한 개선 방안/사회임금정책 개선을 통한 개선 방안/노정노사관계체의 개선을 통한 개선 방안...

(3) 노동운동 방향

○ 당사자 주체의 운동 강화

- 또다른 배제와 시혜, 방치를 넘어 집단적, 자주적 요구와 권리의 주체로
- 코로나19를 자주적 세력화와 조직화의 계기로
- 각개약진을 넘어 공동 요구 실현을 위한 공동운동 확대

○ 민주노총/노동단체/진보시민운동단체의 역할 강화

- 운동 방향 조정
- 정책적 대변 및 지원 역할부터 강화
- 요구 실현을 위한 연대운동강화

□ 별첨 자료 1 : 민주노총 요구안 총괄개요

1) 재난 기간 모든 해고금지! 생계소득보장!

3대 요구

① (취약노동자 최우선 보호) 특수고용, 간접고용, 작은 사업장 등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노동자들을 위한 특별 고용유지·생계소득보장 대책 강화

※ 고용 총량 유지 목표 설정, 대통령령으로 해고금지 긴급 재정 경제명령 발동

- ① 특수고용, 프리랜서, 돌봄노동자,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자를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 제도 보완
- ②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지원제도를 넘어 특수고용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 대책 수립
- ③ 간접고용 사각지대 해소 : 간고노동자에 대한 원청사용사업주의 고용유지책임 및 교섭보장
- ④ 저임금 노동자 최저휴업수당 보장
- ⑤ 작은 사업장 사각지대 해소 :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휴업수당 지급

② (해고없는 위기극복 모델) 고용유지 전제 기업지원정책, 노동시간단축 등의 정책수단과 연계하여 해고 없는 위기 극복 모델 확산

- ① 해고금지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전제된 기업지원: 일방적 지원 위주의 기업지원정책폐기
- ② 해고 없는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의 규제 역할과 지원 역할 동시 강화
- ③ 노동시간 단축(일자리 나누기)을 통한 해고 없는 위기 극복 모델 확립 및 확산
- ④ 해고 없는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산업·업종별 노정, 노사정, 노사 대책 논의 강화
- ⑤ 해고 없는 위기 극복을 위한 사용자의 역할과 책임 확대

③ (포스트 코로나 준비) 포스트 코로나19를 위한 올바른 '뉴딜' 정책과 일자리정책 수립

- ① 뉴딜정책 방향의 전면 재정립 : 규제완화 중심 한국판 뉴딜에서 친환경 녹색, 친안전 뉴딜정책
- ② 사회 공공성 강화 과제와 접목된 공공부문 중심 일자리 창출 정책 시행

2)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과 사회안전망 전면 확대! (3대 요구)

“사회안전망 전면 확대로 위기사회에서 안전사회로 대전환!”

①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 특고 노동자 우선 적용 입법화

1. 모든 취업자에게 고용보험 전면 적용

- ①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특고, 자영업자, 이주노동자 등 모든 취업자의 고용보험 전면적용
- ② 수급요건 완화, 고용지원사업 확대, 지급기간 및 지급수준 확대 등 급여및 보장성 강화
- ③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 기준 및 부과방식 개편
- ④ 재원 획기적 확대 : 정부의 과감한 재정 투입, 재벌(대기업)은 국제수준으로 기여확대, 계급연대 차원에서

고용보험료 인상, 특수지역연금가입자 고용보험 가입방안 논의

⑤ 고용보험 거버넌스에 노동자 참여확대

2. 실업부조 전면 도입

① 청년실업자, 고용보험 요건을 충족 못 한 비정규직 실업자, 폐업한 영세자영업자, 장기실업자 등을 대상으로 실업부조 전면 도입

② 국민취업지원제도 요건 완화, 지급 수준, 지급 기한 등 전면 확대

② 국가방역체계 강화 및 공공의료 확충, 원격의료 도입 반대, 공공적 사회서비스 전면 확대

① 공공보건의료체계 강화 및 공공병원 확충

② 공공제약사 설치로 감염병 치료제-백신 국가책임 공급 강화

③ 원격의료 도입 등 의료 민영화 정책 반대

④ 유급 병가와 상병수당(질병수당)도입. 본인부담 총액상한제 연간100만원

⑤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 및 저소득층 사회보험료 감면 혜택 시 국고지원 방식으로 추진.

⑥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돌봄시설, 사회서비스원 확충 등 공공적 사회서비스 전면 확대

⑦ 철도, 지하철, 공항 등에 재난 PSO(공익서비스 비용보상) 도입

③ 공공 일자리 늘리기 (민간부문 고용대란을 흡수하기위한 정책)

① 공공의료기관 확대 강화 · 보건의료인력 확충

②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및 개선

③ 노동시간 단축 및 교대제 개편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생명안전·유해위험업무 증원

④ 방역 지원 등 긴급업무에 제한적으로 단기 일자리 제공

⑤ 공공부문 비정규직(하청·민간위탁 포함) 일자리 보호

※ 2대 추진과제

① (확대재정정책) 세제개편, 재벌의 책임 강화, 총고용보장기금 조성

① 소득세, 법인세 인상 및 부유세 도입

② 한시적 코로나세(재난세) 도입

③ 국채 발행

④ 무기명 채권 허용 반대

⑤ 재벌 사내유보금 과세 유지

⑥ 재벌 총수의 불법 이익 환수

② (법 개정) 코로나 19 위기 극복을 위한 법 제도 개선

① 특수고용노동자 고용보험 우선 가입

② 고용유지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간산업안정기금 제도개선

③ 재난에 대한 휴업수당 지급 법제화 및 재난긴급생계자금 지원제도 도입

④ 유급 질병휴가, 유급 가족돌봄휴가 법제화

- ⑤ 임금채권보장법 개정
- ⑥ 자영업자 긴급 지원책 마련 및 관련 지원 특별법 제정
- ⑦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 입법 '전태일 3법'
(노조법 2조 개정 노조할 권리 보장, 근기법 11조 개정 5인 미만 사업장 근기법 적용, 중대재해기업처벌법)
- ⑧ 4인 이하 사업장 해고 금지 예외조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

1] (취약노동자 최우선 보호) 특수고용, 간접고용, 작은 사업장 등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노동자들을 위한 특별 고용유지·생계소득보장 대책 강화

(1) 필요성

- 우리 사회의 현 고용안전망 제도에는 특수고용, 간접고용, 작은사업장 등 광범위한 구조적 사각지대가 존재함.
- 코로나19 위기를 통해 확인한 우리 사회의 민낯은 IMF 외환위기 이후 심화된 근본적인 고용구조상의 한계과 맞물려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사각지대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음.
- 이러한 사각지대의 현실을 그대로 둔 채로는 제대로 된 고용, 생계소득 보장 대책이 제대로 세워질 수 없음.
- 그래서 정부도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현 고용유지지원제도를 상회하는 수준에서 대안을 만들어내고 있음. 또한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도 이미 사회 공론화되고 있음.
- 하지만,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노동자들의 긴급한 고용·생계소득위기 해소를 위해서는 턱없이 미흡함.
- 고용보험밖 사각지대 노동자의 고용, 생계소득안정을 위해 긴급하게 도입된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코로나19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코로나19 경제위기 종료시까지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단기적이고 제한적인 대책을 넘어 특고 고용보험 적용 확대, 사회안전망 확대 등 근본 대책 마련으로 나아가야 할 과제가 절박하게 제기되고 있음.
- 나아가, 원청 대기업 중심의 다단계 하도급구조가 확산되어 가는 고용구조의 현실 속에서, 간접고용과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원청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고용유지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문제를 안고 있음. 따라서 비정규직의 고용유지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기간산업안정자금 신청 조건에 고용유지 대상을 간접고용과 특수고용까지 확대해야 하고 위기시 비정규직 고용유지와 안정을 위한 종합적인 가이드라인 제정이 필요함
- 이에 민주노총은 정부에게 현 제도의 부분적 보완에 근거한 고용위기 대책 모색에 머무르지 말고,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노동자의 고용·생계소득보장을 위한 구조적 대책 마련에 초점을 맞추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코로나19 고용유지대책 수립을 요구함

(2) 주요 내용

요구 취지	요구 내용
1) 특수고용, 프리랜서, 돌봄서비스 노동자,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자를 위한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	-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 기간을 코로나19 경제위기 상황 종료시까지로 연장 - 기타 대상 확대, 지원 요건 및 절차 개선 (지원대상에 5인미

제도 보완, 강화	만 사업장 포함, 인력공급업체 소속 노동자 범위 확대, 지원금액 확대)
2)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지원제도를 넘어 특수고용노동자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 대책 수립 강화	- 전국민 고용보험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위해서라도 특고부터 고용보험 우선 적용 - 긴급실업수당 도입 - 국민취업제도 전면 확대 시행
3) 간접고용 사각지대 해소 : 간접고용노동자에 대한 원청사용 사업주의 고용유지 책임 및 교섭 보장	- 파견, 용역업체의 고용유지조건을 사용사업체(원청) 기준으로 변경 -> 사용사업체(원청)의 고용유지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기간산업안정자금지원 신청시 간접고용, 특수고용노동자까지 포함한 것으로 확대 - 간접고용 노동자가 코로나19에 맞선 고용유지를 위해 원청사용사업주와 직접 교섭할 권리 보장 - 코로나19 위기를 명분으로 원청이 하청업체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고용을 위협할 경우, 이를 불공정행위 및 불법파견의 핵심징표로 간주하여 엄정 단속, 규제 - 도급계약상 약속된 작업량 축소로 하청업체가 휴업, 휴직할 경우 원청의 귀책사유이므로, 휴업수당에 대해서도 원하청의 공동연대책임 원칙 적용 - 원청업체가 도급금액 전액을 하청업체에 지급하였을 경우, 휴업을 하였더라도 인건비 100% 지급 원칙 견지 ※ 비정규직 고용유지가이드라인 제정(고용총량유지, 현행제도 강화, 위기시 고용유지 방안, 불법파견직고용 등)
4) 저임금 노동자 최저휴업수당 보장	- 저임금노동자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휴업시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휴업수당이 최소 최저임금은 상회할 수 있도록 휴업수당 지급 기준 개선
5) 작은 사업장 사각지대 해소	- 5인미만 사업장에도 휴업수당 지급 :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 -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용자 대출이 아니라 정부가 해당 금액을 100% 지급, 직접 지원(노동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의 100%, 6개월간)

※ 고용유지지원금 등 단기지원 정책 이후 계속되는 실업대책 협의 방안 마련

※ 코로나19 상황 점검을 위한 특별근로감독 실시·강화

※ 2,3차 대유행, 경기침체 장기화 등 정세 추이에 따라 '재난생계소득' 전 국민 추가 지급

□ 별첨 자료 2 :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제도 개선 요구안 개요

요구 범주	세부 요구 내용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세부추 진계획 보완 요구	돌봄노동자	- 다음 직종을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 대상에 포함 1) 아이돌봄 2) 장애인활동지원사 3)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4) 초단시간(60시간 미만) 영양보호사 5) 주민자치센터 강사
	학습지교사	- 소득감소요건 변경 : 학습지교사는 3월에서 6월 사이에 발생한 급여 중 연속 2개월을 선택할 수 있도록
	무급휴직자	1.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에 대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은 고용보험제도를 통한 고용위기 대응 절차 선시행 2. 무급휴직을 실시하고도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않는 등 노동자의 생계소득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상시적인 근로감독 실시 3. 무급휴직 및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시 특정부서, 노조가입여부, 체불임금 소송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건 부여하고 근로감독 실시 *현 제도는 사용자의 '선의'가 없으면 고용유지지원 신청도 이루어지지 않고 정리해고와 무급휴직으로 이어질 가능성 높음(원주 버스 업체 사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조건으로 노조를 탄압하는 사례가 있음(아시아나 KO, 인천국제공항 카트운영업체 (주)ACS 사례)
	대리운전	1. 특고 기준 1구간 중위소득 100%(건강보험료) 기준, 2구간 소득감소 기준 50% 이상을 중위소득 150%이하로 소득감소 기준은 25%로 조정 2. 어플로 일감을 받는 노동자(대리운전기사 등)는 어플 캡처 자료를 제출해도 입증 가능하도록 개선 3. 어플 기록 제출도 어렵고 업체 확인도 어려운 경우 당사자가 기록해 제출하고 심사과정에서 업체를 통해 확인하도록 개선 4. 특고 중 차상위 생계지원자도 중복지원 가능하도록 개선 5. 코로나19 경제위기 상황 종료시까지 추가 지원 지속 6. 특고 고용보험 적용, 사회안전망 확보 등 근본 대책 마련
	방과후강사	1 '2019.12.~2020.1. 고용보험 미가입자' 조건을 '일정 기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자'로 구체화 *조건 검증이 쉽지 않은 경우 '향후 이 기간 실업급여를 수령하면 지원금은 반납해야 함'이라는 서약 시행으로 보완 2. 소득감소 증빙 방안 보완 : 계약서와 노무 미제공 사실확인서를 통해, 즉 일을 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하지 못한 경우도 해당되도록 하는 방식 병행(지역고용대응 사례 참조) 3. 방과후강사가 학교 긴급방역업무 일을 임시로 하게 될 경우, 긴급고용지원금 지원여부 확인
	셔틀버스	-해당기관에 안내공문 발송 및 신청서 작성 협조요청 *[셔틀버스 관계 해당기관] 전국셔틀버스노동조합/어린이집연합회/유치원연합회/학원연합회/각 학교 연합회 등등
특고 차상	-차상위계층(일부 정부부조 지원받고 있는 대상)이 지원대상 여부 확인	

	위 계층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 차상위계층도 지원대상에 포함
지원 기간 연장	요구 이유	-현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제도는 구조적 사각지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긴급 대책 차원의 한시적이고, 임기응변적이며, 제한적인 조치에 불과 -현 국면의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근본적이고 제도적인 보완대책 논의 병행
	요구 내용	-코로나19 경제위기 상황 종료시까지 지원 기간 연장
근본 대책 수립	특고	-특고부터 고용보험 적용, 전국민고용보험제의 조속한 도입 -긴급실업수당 지급
인천중구지역고용위기 해소		인천중구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선정
기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세부 신청현황 자료 요청

□ 별첨 자료 3 :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관련 민주노총-노동부 실무협의(0527) 결과

1) 개요

- 취지 : 코로나19 대책 민주노총-노동부 3차 실무협의(0421) 결과에 따른 코로나19 긴급고용지원금 관련 소의제별 실무협의
- 일시/장소 : 2020년 5월 27일(수) 14시 / 직업능력 심사평가연구원 1003호
- 참석 : 생략

2) 협의 결과

(1) 돌봄노동자 관련 요구안(요구안 발제 : 전영아 민주일반연맹 코로나19 담당)

요구 및 질문	고용노동부의 답변
<p>아이돌봄, 장애인활동지원사,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초단시간(60시간 미만) 요양보호사, 주민자치센터 강사도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에 포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자치센터 강사는 특고, 프리랜서 기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대상에 포함됨. 단지 예시에 열거되지 않았을뿐임 -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도 특고 프리랜서 지원 대상에 포함됨 - 하지만, 돌봄노동자 포함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노동자 일반을 특고, 프리랜서 기준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지원 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없음 -> 코로나19 긴급지원금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의 고용생계보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긴급하게 도입된 제도로서 고용보험 밖과 안의 기본 경계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 근본적인 문제는 이후 전국민고용보험제의 도입 등과 맞물려 해결하고자 함. - 고용보험에 가입한 노동자도 무급휴직자 기준에 의한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지원은 가능함. 요양보호사 무급휴직자도 여기에 해당함. - 요양보호사의 무급휴직 증빙이 어려운 문제와 관련해서도 사업주의 무급휴직확인서 제출만 있으면 가능한 것으로 열려 있음.
<p><무급휴직 신청 기준 관련 추가 질문> 1. 돌봄기관은 50인미만 사업장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돌봄기관에 한해서 「항공사업법」상 '항공기취급업'(항공지상조업), 인력공급업체 소속</p>	<p>1. 항공기취급업,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는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선정된 업종에서 동일 사업장내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노동자와 받지 못하는 노동자 사이에 형평성의 문제가 생겨난 것을 해결하기 위해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에게 고용안정지원금 혜택이라도 주기 위해 포함시키게 된 것임 ->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에 한해 적용된 기준임</p>

<p>근로자 중 항공기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기업 규모 기준 미적용을 받는 것처럼 사업장기준 미적용대상으로 할 수 없는 것인가?</p> <p>2. 그렇다면 50인 이상 시간제 노동자로 구성된 경우가 다수인 돌봄 센터에 대한 50인 미만 사업장 기준 적용 여부 및 방안은?</p>	<p>2. 시간제 노동자들로 구성된 사업장에 대한 상시인력 파악 기준이 별도로 있음. 예를들어 3시간 일하는 노동자 100이 있는 경우, 100인 상시인력으로 간주하지 않고 1일 8시간을 1인으로 보는 산정 기준을 적용할 경우 상시인력 기준 50인 미만으로 간주될 수 있음. 구체적인 산정기준 자료 추후 전달하겠음</p>
---	---

<돌봄 부분 실무협의 결과 총평(전영아 담당 작성)>

1) 아이돌봄의 경우 이용취소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무급휴직이 가능한지 여부 여가부에 문의 시 휴직으로 볼 수 없다는 답변이 왔으며 무급휴직자로 간주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명확한 지침을 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무급휴직자로 간주 할 수 없다는 답변이 옴. 아이돌봄 이외의 돌봄노동자의 경우도 동일한 답변이 되풀이 될 것이며 무급휴직에 대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명확한 지침을 대상 부처에 하달해야 함

- 아이돌봄-->여가부
- 장애인활동지원사,재가요양등-->보건복지부

2) 50인미만 사업장 기준

-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할 경우 신고서에 근로자수를 보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50인미만 아이돌봄, 장애인활동지원사의 기관은 전국을 통털어 1~2군데 밖에 없음.
- 또한 한 기관에 등록되어 있는 인원이 거의 200인 이상으로 하여 시간단위를 종일근무시간으로 환산하더라도 50인미만 사업장이 나올 수 없음

3) 노동부에서 이야기 하는 무급휴직자 대상에 돌봄 노동자가 포함 되기 위해서는 노동부에서 돌봄기관에 등록되어 있는 노동자가 이용취소로 실질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무급휴직자 대상임을 명확히 하는 지침이 필요하며 돌봄기관에 한해서는 사업장기준 적용을 미적용해야 함

2) 중소기업사업장 관련 요구안(요구안 발제 : 광이경 민주노총 전략조직국장)

요구 및 질문	고용노동부의 답변
<p>사업주의 원활한 무급휴직 확인서 발급 유도 위해 해당 직종 협회 및 노조에 공문 발송(주요 업종별 사용자단체 및 모든 사업장 공문 시행)</p>	<p>- 가능함 - 도심제조업 관련 협회, 노조 등 명단 따로 전달하면 시행하겠음</p>
<p>고용보험 미가입 영세사업장 노동자 증빙 위한 노동이력 카드 도입</p>	<p>별도 답변 없었음</p>

<무급휴직자 대책 보완 강화 요구> 고용유지 지원금 및 무급휴직 일반 절차제도 활용 유도, 근로감독, 무 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신청 요 건 및 심사 절차 강화 등	- 소관 부서가 다름 - 소관 부서에 전달하겠음 => 결과를 6/4일로 예정된 노동부 정책협의에서 확인 및 후후 관련 내용 별도 집중 협의 필요함을 추가 요청함
무급휴직 현황 관련 자료 요청 요 청	- 확인 후 연락, 제공

(3) 특고 관련 요구안(요구안 발제 : 이정훈 민주노총 정책국장)

요구 및 질문	고용노동부의 답변
학습지교사	수용: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소득감소 해당월 선택 인정.
대리운전	1. 불수용: 소득기준은 건보료 기준외에 개인 소득기준도 가능하게 최대한 열어놓고 있음. 2,3 수용: 소득증빙, 이력 등 당사자제출로 객관적으로 확인시 최대 한 가능토록 열어놓음. 다만, 사업주에 강제 확인조치는 쉽지 않음. 4. 수용: 차상위계층 중복지원 인정. 5. 검토: 지원기간 연장은 코로나19 상황보며 추후 검토.
방과후강사	1. 불수용: 고용보험 미가입자 대상에 대한 지원대책의 취지가 있어 19.12-20.1 에 기 고용보험 가입자는 적용 쉽지 않음. 고용보험 제도로 지원이 우선. 2. 수용: 소득증빙, 이력 등 객관적으로 확인시 최대한 가능토록 열어놓음. 3. 수용: 코로나19 이후 학교 긴급방역업무 등에 일을 하더라도 무관하게 지원 인정.
셔틀버스	수용: 사용자단체, 협회와 노조에 홍보 협조 공문 발송하겠음.
차상위계층	수용: 중복지원 가능
지원 기간 연 장	검토: 현재 지원은 임시 예산으로서 한계. 코로나19 상황보며 추후 검토
근본대책 수립	특고 고용보험 적용 추진 예정

(4) 인천공항 관련 요구안(요구안 발제 : 이진숙 민주노총 인천본부 정책국장)

요구 및 질문	고용노동부의 답변
중구(영종) 고용 위기지역으로 신 속 지정	- 상당수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또는 그에 준하는 지원이 가도 록) 지정했기 때문에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별도로 필요한 이유를 모 르겠음. - 또한 중구의 고용지표 및 각종 산업지표가 현저히 악화된 증거가 별로 없고, 고용위기지역 신청서에 이런 부분이 충분히 담기지 않았 음. 이에 대해서는 인천시에 추가 자료 보완을 요청한 상황임. -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등 정부가 조치한 정책들에 대해서는 협회 대표 간담회 등을 통해 모니터링 하고 있음.
노동부-민주노총 유관 단위 간담회 진행	- 담당부서(지역고용정책과)에서는 이에 대한 특별한 답변을 하지 않음. ※ 간담회는 고용위기지역 지정과는 별개로 현재의 고용유지지원 정 책의 적용 실태 점검, 제도보완, 근로감독 사항 등에 대한 논의를 위 한 것이므로 실업급여 담당부서, 노사관계 담당부서와의 협의, 추진 필요.
고용유지지원정책	- 담당부서(실업급여 담당 부서)가 참석하지 않아서 제도 세부내용 확인, 적용

보완	실태 등에 대해 확인 불가했음.
----	-------------------

□ 별첨 자료 4 : <코로나19 대응 고용대책 개선 요구안 : 코로나19 대책 민주노총-고용노동부 4차 실무협의 사전 제출용 초안> 개요

〈코로나19 대응 고용대책〉 개선 요구안 개요

- 코로나19 대책 민주노총-고용노동부 4차 실무협의 사전 제출용 초안-

요구 범주	요구 내용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정책 개선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width: 45%;"> <p>돌봄 무급휴직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안정지원금 실질 지원 대책 마련(5/27 협의 후속 조치)</p> </div> <div style="width: 50%;"> <p>(1) 돌봄노동자도 무급휴직자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 대상 부처에 명확한 지침 하달</p> <p>(2) 돌봄기관의 경우에는 사업장기준 미적용</p> </div> </div>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을 노동이력 및 소득증빙 방안 개선
휴업·휴직자 고용유지 지원정책 개선	(1) 고용유지지원금 및 무급휴직 일반절차 제도 활용 의무화
	(2) 정리해고 기준 보완 및 정리해고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강화
	(3)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신청 요건 및 심사 절차 강화
	(4)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등과 연계된 노조탄압 등의 문제 해결
	(5) 고용보험 의무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사업장의 문제 해결
	(6) 저임금 노동자의 기본 생활, 최저 생활 보장을 위해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휴업수당 지급 기준 차등 적용 또는 하한 설정
	(7) 지원기간 이후 해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후속대책 수립
	(8) 현 고용유지지원제도만으로는 간접고용 포함한 고용총량 유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방안 논의 : 인천 공항 등의 별도 협의와 연계
	(9) 유급휴직, 무급휴직, 신속지원 신청 현황 자료 공유
	(10) 보육노동자페이백 문제 해결 협조
위기 업종부터 해고없는 위기극복을 위한 실질 대책 강화	(1) 인천 공항 별도 실무협의 또는 간담회 진행
	(2) 수출 제조업, 서비스산업 등을 대상으로 해고 없는 위기극복 실현을 위한 집중 논의 추후 별도 진행
코로나19 위기 대응 노동안전 분야 요구	(1) 자료 요청
	(2) 콜센터, 물류센터, 제조업, 건설현장 등 방역 및 점검 감독 대책
	(3) 폭염 및 무더위와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 방역 사업 대책
법 제도 개선 등 근본 대책 수립 및 장기화 대책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고 등 사각지대 노동자부터 고용보험 적용 확대 - 긴급실업수당, 부분 실업 수당 도입 등 - 세부 내용 뒤 자료 참조

코로나19 사각지대 실태와 대안

남우근(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위원)

1. 코로나19 사각지대는 어디인가?

1) 취업자 수 감소

- 코로나19로 인해 취업자 95.8만 명 감소, 임시직이 가장 큰 감소
 -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올해 2월과 4월 사이 취업자는 95만 8천명이 감소함.(계절조정 기준)
 - 임금노동자는 임시직이 45만 2천 명으로 가장 많이 감소했음.
 - 비임금노동자도 15만 명 감소함.

<표 1> 취업자 증감 현황(단위: 천명)

종사상지위별	2020. 02	2020. 03	2020. 04	증감 (2~4월)
임금노동자	20,722	20,219	19,914	-808
_상용직	14,631	14,558	14,415	-216
_임시직	4,723	4,364	4,271	-452
_일용직	1,368	1,297	1,229	-139
비임금노동자	6,744	6,643	6,594	-150
_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1,472	1,398	1,391	-81
_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4,174	4,164	4,155	-19
_무급가족종사자	1,099	1,081	1,048	-51
계	27,466	26,862	26,508	-958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여성이 남성에 비해 감소폭이 큼
 - 여성은 61만 7천명이 감소했고, 남성은 40만 천명이 감소했음.

성별	2020. 02	2020. 03	2020. 04	증감 (2~4월)
남자	15,618	15,375	15,217	-401
여자	11,904	11,467	11,287	-617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중고령자의 취업자 감소가 가장 큼

- 취업자 증감을 연령대별로 보면 60세 이상이 43만 6천 명으로 감소폭이 가장 큼.

<표 3> 연령대별 취업자 증감 현황(단위: 천명)

연령대	2020. 02	2020. 03	2020. 04	증감 (2~4월)
15 - 19세	179	160	130	-49
20 - 29세	3,709	3,572	3,549	-160
30 - 39세	5,537	5,429	5,361	-176
40 - 49세	6,484	6,419	6,326	-158
50 - 59세	6,470	6,354	6,278	-192
60세 이상	5,296	4,918	4,860	-436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음식 및 숙박업이 19만 6천명으로 가장 큰 감소

- 산업별로 보면, ‘음식 및 숙박업’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교육서비스업’ > ‘농림어업’ 순으로 감소폭이 큼.

<표 4> 산업별 취업자 증감 현황(단위: 천명)

산업별	2020. 02	2020. 03	2020. 04	증감 (2~4월)
농업, 임업 및 어업	1,529	1,533	1,425	-104
제조업	4,454	4,422	4,397	-57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77	72	65	-12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	143	146	149	6
건설업	2,018	2,008	1,940	-78
도매 및 소매업	3,560	3,535	3,549	-11

운수업	1,507	1,476	1,450	-57
숙박 및 음식점업	2,285	2,178	2,089	-196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849	846	852	3
금융 및 보험업	796	785	793	-3
부동산업 및 임대업	548	532	525	-2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185	1,132	1,144	-41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343	1,326	1,309	-3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129	1,039	1,053	-76
교육 서비스업	1,862	1,780	1,758	-104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385	2,268	2,254	-13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516	481	487	-29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229	1,204	1,147	-82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 고용보험 사각지대

○ 취업자의 45.2%가 사각지대

- 취업자 중 가입자 54.8%, 가입대상이나 미가입자 13.8%, 법적 제외자 31.4%

취업자 2,735만명 (100%)	보호 (54.8%)	고용보험 가입자	1,353만명 (49.4%)			
		공무원 등	147만명 (5.4%)			
	실질적 사각지대	가입대상이나 미가입	378만명 (13.8%)			
			고용보험 적용제외 임금근로자 (6.5%)	65세이상	117만명 (4.3%)	
				5인미만 농림어업	4만명 (0.2%)	
				가사서비스업	8만명 (0.3%)	
				15시간미만&3개월미만	11만명 (0.4%)	
				특고(경찰에서 임금)	48만명 (1.7%)	
			법적 사각지대	비임금근로자 (24.9%)	특고(경찰에서 비임금)	약 170만명 (6.2%)
					그 외 비임금근로자	약 510만명 (18.6%)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9. 8.). 일자리위원회 보도자료(2020. 5. 15.)에서 인용.

- 임시직, 일용직, 영세사업장의 미가입률이 높음
 - 임시직 69.9%, 일용직 94.5%가 고용보험 미가입자임.
 - 기업규모별로는 5인 미만 사업장의 59.9%가 미가입자임.

<표 5> 특성별 고용보험 가입 현황

구분		가입	미가입	계
종사상지위	상용직	93.5%	6.5%	100.0%
	임시직	30.1%	69.9%	100.0%
	일용직	5.5%	94.5%	100.0%
	전체	70.9%	29.1%	100.0%
기업 규모	1-4명	40.1%	59.9%	100.0%
	5-9명	63.2%	36.8%	100.0%
	10-29명	74.6%	25.4%	100.0%
	30-99명	83.3%	16.7%	100.0%
	100-299명	90.3%	9.7%	100.0%
	300명 이상	94.1%	5.9%	100.0%
	전체	70.9%	29.1%	100.0%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19년 8월) 원자료

- 비정규직의 59.9%가 미가입
 - 정규직은 94.9%가 가입한 반면, 비정규직은 가입률이 40.5%에 그침.
 - 비정규직 중에서도 호출근로, 용역노동, 재택노동, 임시파트의 미가입률이 높음.

<표 6> 고용형태별 고용보험 가입 현황

구분		가입	미가입	전체
정규직 여부	정규직	94.9%	5.1%	100.0%
	비정규직	40.5%	59.5%	100.0%
비정규직 고용형태	일반임시직	33.1%	66.9%	100.0%
	기간제	70.8%	29.2%	100.0%
	상용파트	82.8%	17.2%	100.0%
	임시파트	16.8%	83.2%	100.0%
	호출노동	5.8%	94.2%	100.0%

	용역노동	9.5%	90.5%	100.0%
	파견노동	72.6%	27.4%	100.0%
	개인도급	59.6%	40.4%	100.0%
	재택노동	16.1%	83.9%	100.0%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19년 8월) 원자료로 계산. 비정규직 분류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기준에 따름.

○ 농림어업, 숙박 및 음식점업의 미가입율이 높음

- 농림어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건설업 등의 미가입률이 절반 이상으로 높음.

<표 7> 산업별 고용보험 가입 현황

산업	가입	미가입	전체
농림어업및어업	28.2%	71.8%	100.0%
제조업	88.0%	12.0%	100.0%
전기가스수도업	96.0%	4.0%	100.0%
하수폐기물처리환경복원업	88.4%	11.6%	100.0%
건설업	52.6%	47.4%	100.0%
도소매업	71.5%	28.5%	100.0%
운수업	83.6%	16.4%	100.0%
숙박및음식점업	43.9%	56.1%	100.0%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93.3%	6.7%	100.0%
금융보험업	68.8%	31.2%	100.0%
부동산및임대업	60.0%	40.0%	100.0%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88.9%	11.1%	100.0%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71.6%	28.4%	100.0%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	46.5%	53.5%	100.0%
교육서비스업	49.2%	50.8%	100.0%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79.2%	20.8%	100.0%
예술스포츠및여가서비스업	52.3%	47.7%	100.0%
협회및단체개인서비스업	52.7%	47.3%	100.0%
전체	70.9%	29.1%	100.0%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19년 8월) 원자료

2. 정부 대책의 문제점

1) 고용유지에 대한 지원 규모는 적절한가?

“정부는 1조 4천억 원 가량의 예산을 들여 중소기업 등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해 휴직·휴업수당의 90%까지 지원하고 있다. (중략) 미국은 500인 미만 기업에 1000만달러(120억원)까지 대출해주고, 대출액 중 6월 말까지 고용을 유지하면 대출액을 감면해준다. 제도 시행 이후 13일 만에 600만개의 중소기업 중 160만곳이 대출을 받아 3490억달러(419조원)가 소요됐고, 3000만개의 일자리를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³⁾

- 매우 거칠게 가정해서 계산해볼 때, 앞서의 종사자 지위별 취업자 감소 규모와 월평균임금을 곱하면 월 9조 4천억원이 있으면 이들의 고용을 6개월 유지할 수 있음.
- 같은 규모의 인원이 절반의 소득 감소를 겪었다고 가정하면, 소득 보전에 4조 7천억원이 소요됨. 고용유지와 소득보전을 합해서 14조원이면 6개월 간 고용유지와 소득보전이 가능함.
- 한국에 비해 인구가 6배 가량 되는 미국이 고용유지에만 419조원을 투입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계적으로 대입해보면 한국은 70조원 정도를 투입해야 한다는 것임. 정부 재정 규모의 차이 등은 무시한 거친 가정임. 또한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 투입은 고용유지 이외에 다른 여러 항목도 있음. 그렇더라도 한국이 노동자 고용유지에 1조 4천억 원 정도를 지원한다는 것은 너무 적은 것 아닌가?

<표 8> 실직자 고용 유지시 필요 임금 추정

구분	월평균임금 (만원)	2~4월 실직자 (명)	고용유지시 월 필요임금 (백만원)	6개월 고용유지시 필요임금
----	---------------	-----------------	-----------------------	-------------------

3) 세계일보, “美·유럽, 코로나 고용유지 파격 혜택… 韓도 휴업수당 지원 상향 등 대응 필요”, 2020. 5. 21.

				(백만원)
상용직	315	216,000	680,400	4,082,400
임시직	150	452,000	678,000	4,068,000
일용직	147	139,000	204,330	1,225,980
계	-	807,000	1,562,730	9,376,380

* 월평균임금은 경찰부가조사(2019년 8월) 기준.

2) 지원 방식은 적절한가?

- 앞서의 증언에서 확인되듯이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데에 현실과 맞지 않거나 필요 이상으로 엄격한 부분이 있음. 이에 대해서는 부연하지 않아도 될 것임.
-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검증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지만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은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필요가 있음. 코로나19 사태를 맞아서 ‘지원’이 목적이지만 ‘배제’가 목적은 아님.

3. 고용 관련 대안 모색

1) 단기적 대응 : ‘총고용보장’ 요구가 현실화되기 위한 조건

- “해고금지, 총고용보장을 중심으로 한 경제위기 대응 전면화”(민주노총 상반기 핵심사업 기조 확정 - 4/16 중집)
- 정부도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재정 투입은 여전히 미미함.
- 30대 재벌의 1000조원에 달하는 사내유보금에 대한 문제제기는 지속해야 하지만 상황의 긴박성을 감안한 전술도 필요. 공간을 열기 위한 투쟁과 함께 열쇠도 필요.

○ 노동자 연대 정신을 토대로 자본과 정부에 요구

- 사회적 재난 극복을 위해 “고르게 가난한 세상”을 지향
- 다음과 같은 내용은 상상에 불과할까?

- ① “조직노동자(정규직) 향후 2년간 임금 동결 선언 → 비조직 노동자로 확산
→ 그에 상응하는 자본과 정부의 비용 부담 요구”

- 상용직 연간 평균 임금인상률(5년간) 3.5%. 향후 2년간 임금동결할 경우 49조 원 가량 됨. 이에 상응해서 자본과 정부가 비용 부담시 147조원임.
- ② “노동시간 10%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10%”
- 상용직이 노동시간을 10% 단축하고 그에 따라 임금도 10%를 줄여서 신규 채용 10%를 하면 157만 명의 일자리가 만들어짐.

<표 9> 상용직 월임금과 인상률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평균 인상률
상용직 월임금총액(원)	3,204,163	3,331,212	3,417,905	3,591,519	3,701,889	-
전년 대비 인상률	2.8%	4.0%	2.6%	5.1%	3.1%	3.5%

*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각년도.

<표 10> 2년간 상용직 임금인상액

상용직 인원수(명)	상용직 월임금(원)	평균인상률	개월수	2년간 임금인상액(조원)
15,738,172	3,701,889	3.5%	24	48.9

* 자료 : 인원수 및 월임금은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2019년)

2) 중기적 대응 : ‘전 국민 고용보험제’의 실질화를 위한 조건

○ 전 국민 고용보험제에 대한 높은 기대

- “일반국민 70.4%가 고용보험·실업급여 대상을 모든 취업자로 확대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음.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특고 포함: 찬성(78.4%), △자영업자 포함: 찬성(68.7%)”⁴⁾
- 서울시 조사(5/15~16)에서도 전 국민 고용보험제에 대한 찬성 의견이 79.3%였음. 소상공인 응답도 72.6%가 찬성임.

○ 구체적인 제도 설계와 사회적 합의 필요

- 대통령, 민주당 등 ‘전 국민 고용보험제’를 전방위적으로 표방하고 있음.
- 청와대는 자영업자도 고용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 법 개정을 추진

4) 일자리위원회 보도자료(2020. 5. 15.)

한다는 계획을 밝힘. 우선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등 9개 특수형태근로자(특고·63만명)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올해 안에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함.

- 하지만 2018년 7월 노사정이 모두 참여한 고용보험위원회에서 합의한 내용을 무시하고 특수고용 노동자를 배제한 채 고용보험법을 개정할 것을 볼 때 향후 전망도 보장하기 어려움.
- 민주노총은 ‘전 국민 고용보험제’를 완성하는데 필요하다면 보험료 인상 등 실현 방안을 함께 논의할 용의가 있음을 밝힘.⁵⁾
-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산재적용 과정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함.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라는 이름으로 개념적 구분이 아닌 직종별(9개) 구분을 하고 있고, 전속성과 전업성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자 자체가 적을 뿐만 아니라, ‘적용 제외 신청’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가입률을 떨어뜨리고 있음. 가입률 12% 대에 머물러 있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현황
*2018년 4월말 기준

특수고용직	등록 종사자	산재 적용자	산재 적용률
보험설계사	339,734명	33,711명	9.92%
콘크리트믹서트럭운전자	12,802명	5,913명	46.19%
학습지교사	53,558명	7,857명	14.67%
골프장캐디	28,166명	1,632명	5.79%
택배기사	12,529명	3,881명	30.98%
퀵서비스기사	5,433명	3,138명	57.76%
대출모집인	8,606명	2,094명	24.33%
신용카드모집인	15,834명	2,746명	17.34%
대리운전기사	12명	8명	66.67%
합계	476,674명	60,980명	12.79%

*자료: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

* 출처 : 머니투데이(2018. 5. 18.)

- 특수고용,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을 어떻게 제도 내로 포괄할 것인지, 재원 조달을 위한 보험료 징수체계, 요율을 어떻게 설계하고, 실업급여 기준은 어떻게 할 것인지, 기존 제도와와의 정합성은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이를 뒷받

5) 민주노총 보도자료(2020. 4. 17.)

침하기 위한 입법 및 정부 정책은 어떠한지 등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사회적 공론화를 해야 함. ‘전 국민 고용보험제’가 정부나 정치권 중심의 논의로 흘러가게 될 경우 취지를 살리기 어려울 것은 뻔함.

○ 사용자 책임을 강화

- 노동연구원을 중심으로 ‘전 국민 고용보험제’에 대해 소득(근로소득 + 사업소득)을 기반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이 제안되고 있음. 고용보험 피가입자에 특수고용과 자영인을 포괄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기되는 것인데, 사용자는 임금에 비례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는 방식에서 법인세 납부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고, 이윤이 많은 대기업의 기여는 현재보다 증가하고, 이윤이 적은 기업의 기여는 현재보다 감소하여 사회보험료 납부에서 누진성이 강화된다고 설명함.⁶⁾ 하지만 이런 경우에 특수고용 노동자를 사용하거나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주(고용된 임금노동자가 극히 적은)에 대한 보험료 납부가 어떻게 되는지 불명확함.
- 2018년 7월 고용보험위원회에서 합의된 내용을 토대로 발의(한정애의원 대표발의)된 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은 플랫폼 사업주를 일종의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보아 피보험자격의 신고, 보험료 원천공제와 납부 대행 등을 하게 하는 방식으로, 플랫폼 사업주가 노무제공자에 관한 사용자로서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은 아님. 쿼서비스, 대리운전 등의 경우 노무제공자와 플랫폼 사업주 사이에 노무제공자를 관리하는 업체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관리업체에게 보험료 부담의무를 부과하고 플랫폼 사업주는 납부대행 역할을 하게 한 것임.⁷⁾
- ‘전 국민 고용보험제’를 설계할 때는 플랫폼 운영자의 사용자 부담을 명확하게 해야 할 것임.

○ 제도 운영에 노동의 참여 강화

- 현재의 고용보험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장하도록 되어 있음.(고용보험법 제3조)
- 노동자대표/사용자대표/공익대표/정부대표 등으로 구성된 고용보험위원회가 있지만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심의할 뿐 운영에 참여하지는 못함. 노사가 부

6) 장지연, ‘전국민 고용보험의 필요성과 제도설계 방안’, 「코로나 대응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위한 노동의 과제」 토론회 발제문, 2020. 5. 26.

7) 김철식 외, 「플랫폼노동 종사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국가인권위 보고서, 2019. 168쪽.

담하는 보험료를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셈이며 노동의 참여가 매우 제한적임. 노동이 제도 운영의 일부를 담당하도록 참여를 강화해야 함.

제7조(고용보험위원회) ① 이 법 및 보험료징수법(보험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의 시행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고용보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험제도 및 보험사업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보험료율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제11조의2에 따른 보험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제81조에 따른 기금운용 계획의 수립 및 기금의 운용 결과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보험제도 및 보험사업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장기적 대응 : 공공성이 강화되는 일자리 사업 방향

○ ‘한국형 뉴딜’이 일자리 질이 아닌 양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 경계

- 정부는 6월 1일 한국형 뉴딜에 76조를 투입해서 일자리 55만개를 만들겠다고 밝힘. ▲ 디지털 뉴딜(15개 분야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농어촌 초고속 인터넷 공급 등 비대면 일자리 양산), ▲ 그린 뉴딜(노후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 등)
- ‘새로운 국가 비전’이라는 평가와 ‘기존 정책의 재탕’이라는 평가가 엇갈림.
-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국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사회적으로 경험했음. 코로나19가 ‘극복’된 이후에도 국가의 역할은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음. 하지만 정부의 장악력이 높아지는 차원의 국가의 역할이 아니라 공공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의 국가의 역할이 요구되어야 함. 공공보건의료체계의 중요성, 공적 자원의 배분의 우선순위, 사각지대를 아우르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제도적 보완 등 시장의 영향력이 축소되고 국가의 역할이 강화되는 쪽으로 더욱 나아가야 함.
- 국민들이 ‘기본소득’을 개념이 아닌 체험을 통해 이해하게 되고, 말로만 사

회적 약자가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민낯을 드러낸 양극화 구조를 여실히 경험할 수 있었음. 사회적 위기가 ‘거리두기’, ‘나만의 안전’으로 극복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연대’를 통해 극복되어야 함을 경험한 것이 향후의 일자리 정책에서도 반영되어야 함.

- 하지만 정부의 디지털 뉴딜은 산업정책에 기반한 일자리 만들기 외에 코로나19가 제기하는 사회적 교훈을 담고 있지 못함. ‘비대면 일자리’를 강조하는 것은 코미디 수준.
- 인공지능 활용, 디지털화의 가속은 분명 산업정책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고 일자리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지만, 이를 일자리 만들기만으로 접근하는 것은 또 다른 불안정노동을 양산할 뿐임.
- 이미 크라우드소싱(crowdsourcing)이니, 깃 경제(gig economy)니 하며 듣기만 해도 균열일터, 균열노동이 연상되는데, 이에 대한 경계는 없이 일자리 만들기의 기회로만 언급하는 것은 또 다른 암울한 노동세계를 예비하는 것에 불과함.
- 산업패러다임의 변화에는 유연하게 대응해야겠지만 이것이 일자의 유연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제도적, 정책적 과제를 분명히 해야 함. 공공일자리 확충, 낡은 노동법의 혁신이 우선적 과제가 될 것임.